

무배당 110LTC건강보험 (16.04)

# 무배당 110LTC건강보험 (16.04)

상품요약 및 보장내용

110세까지 간병 안심 보장...  
 가족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필수보험!



### 방카슈랑스 부조리 신고센터안내

- ①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대출과 연계하여 보험가입을 강요하거나 기존에 가입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도록 한 후 새로운 보험계약의 가입을 권유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한 경우, 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② 금융감독원 보험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전화: 1332 · 인터넷: www.fss.co.kr

### 보험문의 및 가입안내 1544-0116

- ① 판매인전용 ② 보상 신청 ③ 계약상담 ④ 약관대출상담

## KB 손해보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7(역삼동) KB손해보험빌딩

보종 22034

이 보험은 배당을 하지 않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KB 손해보험

## 감사의 말씀

안녕하십니까?

저희 KB손해보험에 보내주신 고객 여러분의  
성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KB손해보험은 고객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건실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절하고 신속한 고객서비스를  
바탕으로 고객 여러분께서 믿고 찾으시는  
최고의 보험회사가 되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B 손해보험

## 목 차

|                                |    |
|--------------------------------|----|
|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에 대한 고객 권리 안내 ..... | 5  |
| 고객정보 취급방침 .....                | 8  |
| 보험문의 및 가입안내 .....              | 13 |
|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              | 14 |
| 보험금 청구 구비서류 안내 .....           | 18 |
| 보험금 등 지급시의 적립이율 안내 .....       | 34 |
| 자주 발생하는 민원(예시) .....           | 36 |
| 보험용어 해설 .....                  | 38 |
| 가입자 유의사항 .....                 | 39 |
| 주요내용 요약서 .....                 | 46 |
| 상품 안내 .....                    | 51 |

### 보통약관

#### 1종(건강플랜), 2종(장기간병플랜) 3종(장기간병월지급플랜), 4종(실버플랜)

|                                   |           |
|-----------------------------------|-----------|
| <b>제1절 일반조항 .....</b>             | <b>63</b> |
| <b>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b>    | <b>63</b> |
| 제1조(목적) .....                     | 63        |
| 제2조(용어의 정의) .....                 | 63        |
| <b>제2관 보험금의 지급 .....</b>          | <b>64</b> |
|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 64        |
| 제4조(보장보험료 납입면제) .....             | 64        |
|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 65        |
|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 65        |
| 제7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           | 66        |
| 제8조(보험금의 청구) .....                | 66        |
| 제9조(보험금의 지급절차) .....              | 66        |
|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             | 68        |
| 제11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         | 69        |
| 제12조(주소변경통지) .....                | 69        |
| 제13조(보험수익자의 지정) .....             | 70        |
| 제14조(대표자의 지정) .....               | 70        |
| <b>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의무 등 .....</b> | <b>70</b> |
| 제15조(계약전 알릴 의무) .....             | 70        |

|   |           |
|---|-----------|
| 제16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                        | 71        |
| 제1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 72        |
| 제18조(사기에 의한 계약) .....                             | 73        |
| <b>제 4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b>                   | <b>73</b> |
| 제19조(보험계약의 성립) .....                              | 73        |
| 제20조(청약의 철회) .....                                | 74        |
| 제21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 75        |
| 제22조(계약의 무효) .....                                | 76        |
| 제23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                            | 77        |
| 제24조(보험나이 등) .....                                | 78        |
| 제25조(계약의 소멸) .....                                | 79        |
| <b>제 5 관 보험료의 납입 .....</b>                        | <b>79</b> |
| 제26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                    | 79        |
| 제27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                        | 80        |
| 제28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                           | 81        |
|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br>와 계약의 해지) ..... | 82        |
| 제30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br>회복)) .....      | 82        |
| 제31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br>회복)) .....      | 83        |
| <b>제 6 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b>               | <b>84</b> |
| 제32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br>회) .....       | 84        |
| 제33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                           | 84        |
| 제34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 85        |
| 제35조(해지환급금) .....                                 | 85        |
| 제36조(보험계약대출) .....                                | 85        |
| 제37조(중도인출) .....                                  | 86        |
| 제38조(배당금의 지급) .....                               | 87        |
| <b>제7관 지정대리청구에 관한 사항 .....</b>                    | <b>87</b> |
| 제39조(적용대상) .....                                  | 87        |
| 제40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                           | 87        |
| 제41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                         | 87        |
| 제42조(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청구) .....                   | 88        |
| 제43조(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 절차)                      |           |

|   |            |
|---|------------|
| .....                                     | 88         |
| <b>제8관 분쟁의 조정 등</b> .....                 | <b>88</b>  |
| 제44조(분쟁의 조정) .....                        | 88         |
| 제45조(관할법원) .....                          | 88         |
| 제46조(소멸시효) .....                          | 88         |
| 제47조(약관의 해석) .....                        | 89         |
| 제48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          | 89         |
| 제49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 89         |
| 제50조(개인정보보호) .....                        | 89         |
| 제51조(준거법) .....                           | 90         |
| 제52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                 | 90         |
| <br>                                      |            |
| <b>제2절 1종(건강플랜) 보장조항</b> .....            | <b>92</b>  |
| 2-1. 장기요양간병비(1~4급) 보장 .....               | 92         |
| 2-2. 장기요양간병비(1~2급) 보장 .....               | 94         |
| 2-3. 장기요양간병비(1급) 보장 .....                 | 97         |
| 2-4. 일반상해사망 보장 .....                      | 99         |
| 2-5. 일반상해후유장해 보장 .....                    | 101        |
| 2-6. 암진단비(유사암제외) 보장 .....                 | 103        |
| 2-7. 유사암진단비 보장 .....                      | 106        |
| 2-8. 뇌졸중진단비 보장 .....                      | 108        |
| 2-9.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보장 .....                  | 110        |
| <br>                                      |            |
| <b>제3절 2종(장기간병플랜) 보장조항</b> .....          | <b>112</b> |
| 3-1. 장기요양간병비(1~4급) 보장 .....               | 112        |
| 3-2. 장기요양간병비(1~2급) 보장 .....               | 115        |
| 3-3. 장기요양간병비(1급) 보장 .....                 | 118        |
| 3-4. 일반상해사망 보장 .....                      | 120        |
| 3-5. 일반상해후유장해 보장 .....                    | 122        |
| 3-6. 일반상해사망가족생활지원금(10년매년지급형)보장<br>.....   | 124        |
| <br>                                      |            |
| <b>제4절 3종(장기간병월지급플랜) 보장조항</b> .....       | <b>127</b> |
| 4-1. 장기요양간병지원금(1~4급)(5년매월지급형) 보장<br>..... | 127        |
| 4-2. 장기요양간병지원금(1~2급)(5년매월지급형) 보장<br>..... | 130        |
| 4-3. 장기요양간병지원금(1급)(5년매월지급형) 보장<br>.....   | 133        |
| 4-4. 일반상해사망 보장 .....                      | 136        |

|   |            |
|---|------------|
| 4-5. 일반상해후유장해 보장 .....                  | 138        |
| 4-6. 일반상해사망가족생활지원금(10년매년지급형)보장 .....    | 140        |
| <b>제5절 4종(실버플랜) 보장조항 .....</b>          | <b>143</b> |
| 5-1. 장기요양간병비(1~4급) 보장 .....             | 143        |
| 5-2. 장기요양간병비(1~2급) 보장 .....             | 145        |
| 5-3. 장기요양간병비(1급) 보장 .....               | 148        |
| 5-4. 일반상해사망 보장 .....                    | 151        |
| 5-5. 일반상해후유장해 보장 .....                  | 152        |
| 5-6. 일반상해사망가족생활지원금(10년매년지급형)보장 .....    | 154        |
| 5-7. 화상진단비 보장 .....                     | 157        |
| 5-8. 상해흉터복원수술비 보장 .....                 | 158        |
| 5-9. 김스치료비 보장 .....                     | 160        |
| 5-10.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보장 .....               | 161        |
| 5-11. 각막이식수술비 보장 .....                  | 164        |
| <b>제도성 특별약관</b>                         |            |
|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 .....             | 167        |
|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                     | 168        |
| <b>【별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b>  | <b>170</b> |
| <b>【별표2】 장해분류표 .....</b>                | <b>171</b> |
| <b>【별표3】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b>         | <b>194</b> |
| <b>【별표4】 제자리 신생물 분류표 .....</b>          | <b>195</b> |
| <b>【별표5】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b> | <b>196</b> |
| <b>【별표6】 뇌졸중 분류표 .....</b>              | <b>197</b> |
| <b>【별표7】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 .....</b>          | <b>197</b> |
| <b>【별표8】 화상분류표 .....</b>                | <b>198</b> |

---

---

##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에 대한 고객 권리 안내

---

---

### 1. 금융서비스 이용 범위

- 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여부 판단 목적 및 고객이 동의한 목적만으로 이용됩니다.
- 나. 고객은 영업장·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1) 금융회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이하 ‘본인정보’)를 제휴·부가서비스 등을 위해 제휴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 및 2) 당해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소개 및 구매권유(이하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동의를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제휴·부가서비스 및 신상품·서비스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고객 권리

#### 가.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사실 통보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본인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타 금융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제공한 본인정보의 주요 내용 등을 알려주도록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신청방법

- 전화 : ☎ 1544 - 0116
- 인터넷 : <http://www.kbinsure.co.kr>  
[인터넷창구 > 고객정보변경 > 개인정보활용동의철회]
- 서면 : 135-55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7 KB손해보험빌딩

#### 나.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등으로

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주소·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다.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마케팅 목적의 전화 등의 중단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가입 신청시 동의를 한 경우에도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및 당해 금융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전체 또는 사안별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고객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전국은행연합회 또는 신용조회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 - 신청방법

- 전화 : ☎ 1544 - 0116
- 인터넷 : <http://www.kbinsure.co.kr>
- 서면 : 135-55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7 KB손해보험빌딩

- 신청자 제한 : 신규 거래고객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라. 본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본인정보에 대해 열람 청구가 가능하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의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신청방법

- 전화 : ☎ 1544 - 0116
- 인터넷 : <http://www.kbinsure.co.kr>
- 서면 : 135-55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7 KB손해보험빌딩

#### 마. 본인정보의 무료 열람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

에 따라 본인정보를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신용조회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코리아크레딧뷰로(주) 올크레딧

: ☎ 02)708-6000, 인터넷 [www.koreacb.com](http://www.koreacb.com)

·NICE평가정보(주) 마이크레딧

: ☎ 1588-2486, 인터넷 [www.mycredit.co.kr](http://www.mycredit.co.kr)

·NICE평가정보(주) 크레딧뱅크

: ☎ 1600-1533, 인터넷 [www.creditbank.co.kr](http://www.creditbank.co.kr)

※ KB손해보험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로 고객님의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위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문제가 있으신 경우 아래의 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 당사<br>개인신용정보<br>보호담당자                   | 손해보험협회<br>개인신용정보<br>보호담당자 | 금융감독원<br>금융민원센터     |
|----|---|---------------------------|---------------------|
| 전화 | (031)590-5905                           | (02) 3702-8500            | (국번없이) 1332         |
| 주소 | 경기도 구리시<br>경춘로 260<br>KB손해보험빌딩<br>정보보호부 | 서울시 종로구<br>종로5길 68        | 서울시 영등포구<br>여의대로 38 |

※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불만사항 등이 있을 경우 당사 방카 슈랑스콜센터[☎ 1544-011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정보 취급방침

KB금융그룹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고객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KB금융그룹은 금융지주회사법령에 의해 그룹사간에는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 2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① 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3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이하 “고객정보제공절차”라 한다)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2. 고객정보의 암호화 등 처리방법
3. 고객정보의 분리 보관
4. 고객정보의 이용기간 및 이용목적
5. 이용기간 경과 시 고객정보의 삭제
6. 그 밖에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증권을 매매하거나 매매하고자 하는 위탁자가 예탁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증권총액정보등”이라 한다)를 고객정보제공절차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

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예탁한 금전의 총액
2. 예탁한 증권의 총액
3. 예탁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
4. 채무증권의 종류별 총액
5. 수익증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총액
6. 예탁한 증권의 총액을 기준으로 한 위탁자의 평균 증권 보유기간 및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 거래회수

이에 따라 KB금융그룹은 KB금융지주회사를 중심으로 고객정보를 그룹사간에 제공 및 이용하기 위하여 「고객정보 취급방침」을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은 고객 여러분의 금융거래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 더욱 더 만족스러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며 만에 하나 발생할지도 모르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공되는 정보의 종류 및 제공처를 한정하고, 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

## I. 제공되는 고객정보의 종류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3.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제2항에 따른 증권총액정보등(위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제2항 참조)

## II. 고객정보의 제공처

KB금융그룹 중 금융지주회사법령에 의한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이 가능한 회사는 KB금융지주(금융지주회사), KB국민은행(은행 및 외국환업), KB손해보험(손해보험업), KB국민카드(신용카드업), KB투자증권(금융투자업), KB생명보험(생명보험업), KB자산운용(집합투자업, 투자일임 및 투자자문업), KB캐피탈(리스, 할부금융업), KB저축은행(상호저축은행업), KB부동산신탁(신탁업), KB인베스트먼트(투자 및 용자업), KB신용정보(신용조사 및 추심 대행업), KB데이터시스템(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입니다.

### Ⅲ. 고객정보의 보호에 관한 내부방침

KB금융그룹에서는 고객 여러분의 고객정보를 최대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그룹사간 정보 제공 및 이용이 아래와 같이 엄격한 절차와 관리·감독 하에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 ①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은 신용위험관리 등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만 이용되도록 하였습니다.
- ② 그룹사의 임원 1인 이상을 고객정보관리인으로 선임하여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련된 일체의 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 ③ 그룹사별로 소관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관리를 도모하였습니다.
- ④ 고객정보의 요청 및 제공 시 서면 또는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하여 고객정보관리인의 결재를 받은 후 요청 및 제공하도록 하는 등 업무 프로세스의 정형화를 통해 엄격한 관리 및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 ⑤ 그룹사간 고객정보의 요청 및 제공, 이용 등과 관련한 업무에 대하여 금융지주회사 고객정보관리인에게 총괄관리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고객정보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 ⑥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 관련 취급방침의 재개정 시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고, 각 영업점(본점 해당부서 포함), 그리고 각 그룹사 홈페이지등에 게시하는 등 고객공시 의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⑦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고객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연1회 이상 통지하는 등 고객의 자기정보 접근권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⑧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고객 분을 위해 적절한 보상 및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민원사항에 대한 안내 및 상담, 처리, 그리고 결과 및 통지 등 민원처리 관련 일체의 업무를 수행할 소관부서를 그룹사마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소관부서 외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제도를 통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⑨ 고객정보 제공 및 관리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 자만 고객정보에 접근하고, 고객정보의 송수신, 보관 등에 있어 암호화하여 관리하며, 천재지변 및 외부로부터의 공격 침입 등 불가항력에 대비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고객정보와 관련된 임직원에게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보안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보안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KB금융그룹은 그룹사간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을 허용한 것이 금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우리나라 금융산업을 선진화시키기 위한 조치임을 명심하고 고객정보의 교류를 토대로 고객 여러분들께 보다 편리하고 질 높은 선진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며, 고객 여러분의 고객정보의 보호 및 엄격한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K B 금융 그룹

|          |         |
|----------|---------|
| KB금융지주   | 고객정보관리인 |
| KB국민카드   | 고객정보관리인 |
| KB자산운용   | 고객정보관리인 |
| KB부동산신탁  | 고객정보관리인 |
| KB데이터시스템 | 고객정보관리인 |
| KB손해보험   | 고객정보관리인 |
| KB생명보험   | 고객정보관리인 |
| KB국민은행   | 고객정보관리인 |
| KB투자증권   | 고객정보관리인 |
| KB캐피탈    | 고객정보관리인 |
| KB인베스트먼트 | 고객정보관리인 |
| KB저축은행   | 고객정보관리인 |
| KB신용정보   | 고객정보관리인 |

---

---

## 보험문의 및 가입안내

---

---

### 사고접수, 보험처리 등 보험계약 관련 문의

☎ 1544-0116 (지역번호 없이)

(홈페이지: [www.kbinsure.co.kr](http://www.kbinsure.co.kr))

● 계약조회, 변경, 해지, 기타상담 : 평일 09:00 ~ 18:00  
[토, 일, 공휴일제외]

### 보험모집질서 확립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전화 : 1332

홈페이지 : [www.fss.or.kr](http://www.fss.or.kr)

##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귀하의 금번 사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시어 보험금 청구 서류를 우편, 전화, FAX 및 인터넷([www.kbinsure.co.kr](http://www.kbinsure.co.kr))을 통하여 접수하여 주시면 신속히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 ■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 < 보험금 청구 절차 >

- 당사 보험금청구서 양식에 보험금청구권자가 청구(사고) 내역 기재 및 자필서명을 하고, 구비서류를 확인하신 후 관련서류를 준비합니다.
  - \* 보험금청구서 양식 및 구비서류 안내문은 당사 홈페이지에서 출력 및 확인이 가능하고, 방카슈랑스콜센터(☎ 1544-0116)에 요청하시면 팩스, e-mail 또는 우편으로 고객님의게 발송해 드립니다.



-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 제도와 관련하여 실손의료보험 다수가입 계약자가 당사에서 다른 다수 보험가입회사에 청구 관련 구비서류 제출 대행을 원하시는 경우 실손의료비 손생보청구대행서비스 동의서에 서명하고 제출합니다.



- 보험금청구서와 관련 구비서류를 가까운 고객센터에 방문해서 접수하거나, 대표팩스, 우편, 홈페이지 등 서류 접수처를 통해 제출합니다.



- 보내주신 청구서류에 대하여 사고접수 완료시 접수번호 및 보상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휴대폰 문자메세지(SMS)로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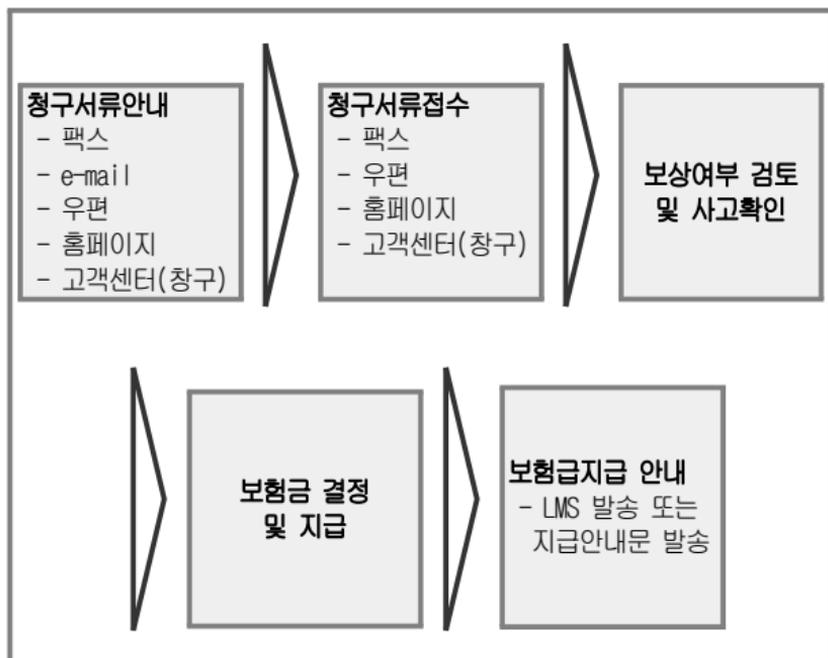


- 보험금 청구서류를 발송하기 전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당사 방카슈랑스콜센터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상담가능시간 : 09시~18시)

## < 서류접수처 >

- 대표팩스 접수 : 대표팩스번호 0505-136-6500
  - 작성된 보험금청구서와 관련 구비서류를 대표팩스번호로 보내주시면 『팩스접수증』을 고객님의 발송하신 팩스로 송부해 드립니다.
- 우편접수 : 우편접수 하시기 이전에 방카슈랑스콜센터로 문의하시면 해당 주소를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 홈페이지접수 : [www.kbinsure.co.kr](http://www.kbinsure.co.kr)  
(모바일 : [m.kbinsure.co.kr](http://m.kbinsure.co.kr))
  - 당사 홈페이지에서 보험금청구 서류접수를 하실 경우 구비서류를 파일첨부(JPG,TIFF) 또는 팩스로 전송해 주셔야만 정상적으로 접수가 완료되며, 금융회원 로그인을 필요로 합니다.
- 방문접수 : 가까운 고객센터를 방문하시면 직접 접수가 가능합니다.
  - 가까운 고객센터는 당사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고, 방문시 보험금청구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보험금청구접수증을 교부해 드립니다.

## <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



## ■ 보험금 청구 관련 안내

- 보험금을 받으실 통장은 피보험자 본인 명의의 통장이어야 합니다.  
단,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엔 위임장 없이 친권자(부

모) 계좌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안내문에 기재된 서류 이외에도 추가서류를 요청 드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경우에 따라 손해사정을 위한 방문조사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담당자가 별도로 연락을 드립니다.

### ■ 손해사정사 선임 및 조사

-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사고 현장조사, 병원 방문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고객의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법인\*에게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 손해사정법인 : 보험업법에 따라 공정한 보험금 지급심사에 대해 인가받은 업체
- KB손해보험회사가 손해사정법인을 선임하는 경우 비용은 KB손해보험회사가 부담하며 가입자가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 그 비용은 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 장해진단서 제출시 유의 사항

- 장해진단서를 제출 하시는 경우에는 3차 의료기관\* 에서 진단을 요청 드리며 병원 진단 전에 보상 담당자와 협의하시는 것이 신속한 보험금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 \* 3차 의료기관 : 500병상 이상의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 ■ 의료심사

- 상해 질병보험 등에서는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여부와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진단서, 치료관련 기록 등 제출하여 주신 서류를 기초로 해당 과별 전문의에 의한 의료심사가 시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KB손해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장해급부 청구시 장해상태에 대하여 당사 요청에 의해서 장해 재심사(재진단)가 시행될 수 있으며, 비용은 KB손해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 ■ 보험사간 치료비, 벌금, 배상책임 분담 지급 (비례보상 적용)

-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와 벌금, 교통사고처리보장, 배상책임 등 실비를 보상하는 상품의 경우 다른 보험회사의 가입여부에 따라 비례보상원칙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이미 가입된 보험계약에서 보상한 금액이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금이 지급된 이후 타사계약이 확인된 경우에는 기지급한 의료비(별금, 배상책임) 보험금에 대하여 환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타 보험사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계약은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접수 대행

- 2009. 10. 1 실손의료보험제도 개선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 연대책임 조항이 신설·시행되고 있고, 실손의료보험 다수계약자의 경우 보험금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개별 보험회사에 각각 청구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서류 접수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실손의료보험 다수계약자가 요청할 경우 최초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 받은 회사에서 다른 다수보험 가입회사에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관련 구비서류 제출을 대행하는 제도로서 이 경우 타 회사에 자료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를 한 청구 건에 한해서 시행합니다.

### ■ 보험금 지급안내 및 심사 절차 조회 방법

-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사고 접수시 통보하여 주신 전자우편이나 팩스로 보험금 지급안내문이 발송됩니다.
- KB손해보험회사 홈페이지([www.kbinsure.co.kr](http://www.kbinsure.co.kr)/모바일: [m.kbinsure.co.kr](http://m.kbinsure.co.kr))에 접속하시면 계약내용 및 사고처리 진행경과 및 지급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재심사 청구

- KB손해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심사 결과 보험금 부지급으로 결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유선으로 안내드리며, 보험금 부지급 결정 및 보험금 결정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KB손해보험회사 고객센터로 통보하시면 재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접수 : 홈페이지([www.kbinsure.co.kr](http://www.kbinsure.co.kr))에 접속하여 신청
  - 우편접수 : 우편접수 하시기 이전에 방카슈랑스콜센터로 문의하시면 해당 주소를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 KB손해보험 방카슈랑스콜센터 : 1544-0116

## 보험금 청구 구비서류 안내

- ※ 사고내용, 특성, 상품(보장내역)에 따라 추가 심사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진단서, 통원확인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수술확인서, 진료차트 등에는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 2015.1.1일부터 실손의료보험 통원의료비는 동일사고 청구건당 3만원초과 10만원이하 청구시 처방전(질병분류기호 기재)으로 대체가능합니다.

### 1. 질병사고

#### ○ 공통 서류

| 구분  | 구비서류   | 발급처  |
|-----|--|------|
| 공 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li> <li>-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계좌번호 포함</li> <li>• 피보험자/청구인의 신분증 사본<br/>(미성년자 생략가능)</li> </ul>  | 동사무소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요시) 추가서류</li> <li>• 가족관계 확인 필요시 (배우자, 자녀 등의 보장상품,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br/>: 가족관계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li> <li>• 대리인 청구시 : 위임장, 보험금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보험금청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li> </ul> |      |

#### ○ 의료비

| 구분 | 구비서류  | 발급처  |
|----|---|------|
| 입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단서(단, 50만원이하시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확인서 또는 진단명 및 입원기간이 포함된 진료확인서로 같음)</li> <li>• 입퇴원확인서 (진단서에 입원기간이 포함된 경우 및 실손의료보험의 경우는 제외)</li> </ul> | 진료병원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진료비계산서(영수증)</li> <li>진료비세부내역서 (비급여 내역이 없는 경우 생략가능)</li> </ul>   |      |
| 통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만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자별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및 약제비 계산서(영수증)<br/>(단, 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은 추가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li> </ul> </li> <li>■ 3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자별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및 약제비 계산서(영수증)</li> <li>처방전 (질병분류기호 기재)<br/>(단, 질병분류기호가 없는 경우에는 추가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li> </ul> </li> <li>■ 10만원 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자별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및 약제비 계산서(영수증)</li> <li>처방전 (질병분류기호 기재)</li> <li>※ 추가증빙서류(필요시) : 진단서, 통원 확인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차트 등</li> <li>※ 카드 결제 영수증은 증빙서류가 아님</li> </ul> </li> </ul> | 진료병원 |

○ 진단금

| 구 분               | 구비서류  | 발급처  |
|-------------------|---|------|
| 암<br>(제자리<br>암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암(제자리암 등)확진 진단서</li> <li>조직검사결과지</li> <li>암수술급여금 : 수술확인서</li> </ul>  | 진료병원 |
| 두번째<br>암II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암(제자리암 등)확진 진단서</li> <li>조직검사 결과지</li> <li>수술기록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발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암세포의 제거여부를 확인시에는 『첫번째 암』에 대한 “조직검사결과” 지와 “수술기록지” 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첫번째암』에 대한 “조직검사결과지” 와 “수술기록지” 가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첫번째암』의 암</li> </ul> </li> </ul> | 진료병원 |

|                       |  |      |
|-----------------------|--|------|
|                       | 세포가 제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
| 2대질병<br>치료비<br>(뇌/심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단서</li> <li>• 정밀검사결과지(특정질병에 따라 다르므로 담당자와 상의)(예: CT, MRI, 심전도 등)</li> </ul> | 진료병원 |
| 특정<br>질병<br>수술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단서</li> <li>• 수술확인서</li> </ul>   | 진료병원 |
| 기타<br>진단금             | • 진단서(약관내용에 따라 추가서류 필요)  | 진료병원 |

※ 진단서는 반드시 한국질병분류번호가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 ○ 사망

| 구분 | 구비서류  | 발급처                 |
|----|---|---------------------|
| 사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원본 또는 사본(원본대조필 포함)</li> <li>* 사본의 경우 피보험자 기본증명서(사망사실 기재) 첨부</li> </ul> <p>※ (수익자 미지정시) 추가 요청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속관계 확인서류 (예: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li> <li>•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br/>: 상속인 각각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개인[신용]정보 처리동의서</li> </ul> | 경찰서<br>진료병원<br>동사무소 |

### ○ 태아보험

| 구분                          | 구비서류   | 발급처 |
|-----------------------------|--|-----|
| 태아<br>보험                    | • 산전기록지(계약상 출생예정일 기준 14일 이상 조기 출생한 경우)   |     |
| 신생<br>아<br>입원<br>일당/<br>일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생증명서</li> <li>• 진단서 [단, 50만원이하시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확인서 또는 진단명 및 입원기간이 포함된 진료확인서로 같음]</li> </ul> |     |

|                      |  |   |
|----------------------|--|---|
| 저체<br>중아<br>육아<br>비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원확인서 [인큐베이터 사용시 해당기간 명시 / 진단서에 입원기간(인큐베이터 사용기간)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li> </ul> |   |
| 유산/<br>사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진단서(유산), 사산증명서(사산)</li> </ul>   | - |

## 2. 상해사고

### ○ 공통 서류

| 구 분 | 구비서류  | 발급처  |
|-----|---|------|
| 공 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계좌번호 포함</li> </ul> </li> <li>피보험자/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미성년자 생략가능)</li> </ul>                                     | 동사무소 |
|     | ※ (필요시) 추가서류<br><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족관계 확인 필요시 (배우자, 자녀 등의 보장상품,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br/>: 가족관계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li> <li>대리인 청구시 : 위임장, 보험금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보험금청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li> </ul> |      |

### ○ 사고증빙서류

| 구 분      | 구비서류   | 발급처    |
|----------|--|--------|
| 산재<br>사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업재해처리내역서 또는 보험급여지급확인서</li> <li>* 추가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급수/사고내용 확인시 : 산재요양신청서</li> <li>- 입원일당/의료비 청구시 : 입퇴원확인서, 보험급여원부</li> </ul> </li> </ul> | 근로복지공단 |
| 폭행<br>사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건사고사실확인서</li> </ul>  | 경찰서    |

|                           |   |      |
|---------------------------|---|------|
| 군인<br>재해<br>사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무상병인증서</li> </ul>                                   | 군병원  |
| 의료<br>사고<br>등<br>법원<br>분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원판결문</li> </ul>                                     | 법원   |
| 기타<br>사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구서 작성시 6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작성</li> <li>• 병원초진차트</li> </ul> | 진료병원 |

○ 의료비

| 구<br>분 | 구비서류   | 발급처  |
|--------|--|------|
| 입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단서(단, 50만원 이하시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확인서 또는 진단명 및 입원기간이 포함된 진료확인서로 같음)</li> <li>• 입퇴원확인서 (진단서에 입원기간이 포함된 경우 및 실손의료보험의 경우는 제외)</li> <li>• 진료비계산서(영수증)</li> <li>• 진료비세부내역서 (비급여 내역이 없는 경우 생략가능)</li> </ul>   | 진료병원 |
| 통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만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자별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및 약제비계산서(영수증)<br/>(단, 산부인과, 향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은 추가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li> </ul> </li> <li>■ 3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자별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및 약제비계산서(영수증)</li> <li>• 처방전 (질병분류기호 기재)<br/>(단, 질병분류기호가 없는 경우에는 추가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li> </ul> </li> <li>■ 10만원 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자별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및 약제비계산서(영수증)</li> </ul> </li> </ul> | 진료병원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처방전 (질병분류기호 기재)</li> <li>※ 추가증빙서류(필요시) : 진단서,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차트 등</li> <li>※ 카드 결제 영수증은 증빙서류가 아님</li> </ul> |  |
|--|--|--|

○ 사망

| 구분 | 구비서류  | 발급처                 |
|----|---|---------------------|
| 사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원본 또는 사본 (원본대조필 포함)</li> <li>* 사본의 경우 피보험자 기본증명서(사망사실 기재) 첨부</li> <li>※ (수익자 미지정시) 추가 요청서류</li> <li>• 상속관계 확인서류 (예: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li> <li>•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 상속인 각각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개인 [신용]정보 처리동의서</li> </ul> | 경찰서<br>진료병원<br>동사무소 |

○ 후유장애

| 구분   | 구비서류   | 발급처                                      |
|------|--|--|
| 후유장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유장애 진단서</li> <li>※ 발급前 보상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다음의 경우 일반진단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성신부전 : 최초 혈액투석일, 환자상태 기재</li> <li>- 사지절단 : 절단부위, 환자상태 기재, X-ray필름 첨부</li> <li>- 인공관절 치환수술건 : 수술명, 수술일자 기재</li> <li>- 비장, 신장적출 수술건 : 비장, 신장적출 수술일 기재</li> </ul> </li> </ul> | 대학(종합)병원<br><br><br><br><br><br><br>진료병원 |

○ 기타

| 구분                                | 구비서류  | 발급처         |
|-----------------------------------|---|-------------|
| 골절/<br>화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진단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차트 등 진단명이 포함된 서류</li> <li>화상 진단의 경우 심재성 여부 필수 기재된 진단서</li> </ul> | 진료병원        |
| 수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진단서, 수술확인서 등 진단명, 수술명, 수술일자가 포함된 서류</li> </ul>   | 진료병원        |
| 응급<br>비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19구급구조증명서 (가족 이용시 주민등록등본 필요)</li> </ul>   | 관할<br>소방서   |
| 학원<br>폭력/<br>강력<br>범죄<br>피해<br>보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건사고 사실확인원</li> <li>진단서</li> </ul>   | 경찰서<br>진료병원 |
| 상해<br>흉터<br>복원<br>수술<br>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진단서</li> <li>수술확인서(수술의 직경cm 확인 필요)</li> </ul>  | 진료병원        |

### 3. 교통사고

○ 공통 서류

| 구분     | 구비서류   | 발급처  |
|--------|--|------|
| 공<br>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li> <li>-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계좌번호 포함</li> <li>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미성년자 생략)</li> </ul>   | 동사무소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요시] 추가서류</li> <li>가족관계 확인 필요시 - 배우자, 자녀 등의 보장상품,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li> <li>: 가족관계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li> <li>대리인 청구시 : 위임장, 보험금청구권자</li> </ul> |      |

|  |  |  |
|--|--|--|
|  | 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보험금청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 처리동의서 |  |
|--|--|--|

○ 의료비 및 입원일당

| 구분         | 구비서류  | 발급처         |
|------------|---|-------------|
| 자동차 보험 처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사고 처리확인서 (자사 자동차보험 처리時 생략가능)</li> </ul>  | 해당 보험사      |
| 자동차 보험 미처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사고 사실확인서</li> <li>• 진단서(단, 50만원이하시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확인서 또는 진단명 및 입원기간이 포함된 진료확인서로 같음)</li> <li>• 입퇴원확인서 (진단서에 입원기간이 포함된 경우 및 실손의료보험의 경우는 제외)</li> <li>• 진료비계산서(영수증)</li> <li>• 진료비세부내역서 (비급여 내역이 없는 경우 생략)</li> <li>• 경찰서 미신고시 재해사고 증명서류제출(병원초진차트)</li> </ul> | 경찰서<br>진료병원 |

○ 사망

| 구분 | 구비서류  | 발급처                 |
|----|---|---------------------|
| 사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사고 사실확인서</li> <li>•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원본 또는 사본 (원본대조필 포함)</li> <li>* 사본의 경우 피보험자 기본증명서(사망 사실 기재) 첨부</li> </ul>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익자 미지정시) 추가 요청서류</li> <li>• 상속관계 확인서류 (예: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li> <li>•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 상속인 각각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개인 [신용]정보 처리동의서</li> </ul> | 경찰서<br>진료병원<br>동사무소 |

○ 후유장해

| 구분   | 구비서류  | 발급처      |
|------|---|----------|
| 후유장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후유장해 진단서</li> <li>※ 발급前 보상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li> </ul>  | 대학(종합)병원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의 경우 일반진단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li> <li>- 만성신부전 : 최초 혈액투석일, 환자 상태 기재</li> <li>- 사지절단 : 절단부위, 환자상태 기재, X-ray필름 첨부</li> <li>- 인공관절 치환수술건 : 수술명, 수술일자 기재</li> <li>- 비장, 신장적출 수술건 : 비장, 신장적출 수술일 기재</li> </ul> | 진료병원     |

○ 기타

| 구분              | 구비서류  | 발급처       |
|-----------------|---|-----------|
| 운전면허정지보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통사고 사실확인서</li> <li>면허정지 행정처분 확인원(교육必後)</li> <li>운전경력 증명서</li> </ul>   | 경찰서       |
| 운전면허취소보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통사고 사실확인서</li> <li>면허취소 행정처분 확인원</li> <li>운전경력 증명서</li> </ul>   | 경찰서       |
| 자동차사고벌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통사고 사실확인서</li> <li>약식명령서(별지 포함)</li> <li>벌금영수증</li> </ul>   | 경찰서<br>법원 |
| 교통사고처리보장(중상해포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통사고 사실확인서</li> <li>피해자 진단서</li> <li>경찰서에 제출된 형사합의서(합의금액 명시)</li> <li>공소장</li> <li>공탁서 및 피해자 공탁금 출금 확인서(미합의시)</li> </ul> | 경찰서<br>법원 |

|                |   |           |
|----------------|---|-----------|
| 자동차사고변호사 선임 비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사고 사실확인서</li> <li>• 사고증명서(소장, 선임한 변호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li> </ul> | 경찰서<br>법원 |
|----------------|---|-----------|

#### 4. 골프사고

##### ○ 공통 서류

| 구분 | 구비서류  |
|----|---|
| 공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li> <li>-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계좌번호 포함</li> <li>• 피보험자/청구인의 신분증 사본</li> </ul> |

##### ○ 기타

| 구분      | 구비서류   |
|---------|--|
| 상해 사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해사고 구비서류와 동일</li> </ul>  |
| 출인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인원 증서(골프장 발급)</li> <li>• 출인원 확인서(동반경기자 2인, 동반캐디)</li> <li>• 스코어카드 사본</li> <li>• 출인원 비용 영수증 원본</li> </ul>                             |
| 골프용품 파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고경위서(본인, 제3자, 골프시설관리자)</li> <li>• 파손용품 사진</li> <li>• 수리영수증 또는 견적서(수리불가시 수리업체의 수리불가 소견서와 파손된 골프채 송부)</li> <li>• 골프용품 구입영수증</li> </ul> |
| 골프용품 도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난사실확인원(경찰서 발급)</li> <li>• 골프용품 구입영수증</li> </ul>  |

## 5. 재물사고

### ○ 공통 서류

| 구분 | 구비서류  |
|----|---|
| 공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br/>-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계좌번호 포함</li> <li>• 보험금수취인의 신분증 사본</li> <li>• 보험금청구권자가 타인에게 위임할 경우 : 위임장,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li> <li>• 사업자등록증</li> <li>• 화재사실확인원(경찰서), 화재증명원(소방서)</li> <li>• 수리 및 재조달 견적서, 영수증(수리업체, 재건축업체, 구입업체)</li> </ul> |

### ○ 기타

| 구분      | 구비서류   |
|---------|--|
| 건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물등기부등본</li> <li>• 건축물 관리대장</li> <li>• 임대차 계약서</li> </ul>   |
| 기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계 관리대장</li> <li>• 감정평가서(질권물건)</li> <li>• 리스계약서(리스물건)</li> </ul>  |
| 시설/집기비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 및 집기비품 관리대장</li> <li>• 시설 개보수 확인서류</li> </ul>  |
| 가재도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등본</li> <li>• 가재도구 명세서</li> </ul>   |
| 동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고 및 손해명세서</li> <li>• 수불대장</li> <li>• 임가공계약서, 작업지시서</li> </ul>  |
| 중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기등록원부(사본)</li> <li>• 수입면장(수입품)</li> <li>• 운전면허증 양면 사본</li> <li>• 리스계약서(리스물건)</li> <li>• 임대차 계약서</li> <li>• 도급 계약서</li> </ul> |

## 6. 도난사고

### ○ 공통 서류

| 구분 | 구비서류   |
|----|--|
| 공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br/>-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계좌번호 포함</li> <li>• 보험금수취인의 신분증 사본</li> <li>• 보험금청구권자가 타인에게 위임할 경우 : 위임장,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li> <li>• 사업자등록증</li> <li>• 도난사고접수 확인원(경찰서)</li> </ul> |

### ○ 기타

| 구분                         | 구비서류  |
|----------------------------|---|
| 현금<br>도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제내역(현금시제표)</li> <li>• 거래원장</li> <li>• 거래영수증</li> </ul>  |
| 물품<br>도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구입영수증</li> <li>• 신품견적서</li> <li>• 자산대장</li> </ul>  |
| 상품<br>권<br>/유가<br>증권<br>도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제내역(현금시제표)</li> <li>• 거래원장</li> <li>• 거래영수증</li> <li>• 도난된 유가증권의 번호가 기재된 신문 공시문</li> <li>• 제권판결문, 제권판결에 소요된 비용 영수증</li> </ul> |

## 7. 배상사고

### ○ 공통 서류

| 구분 | 구비서류   |
|----|--|
| 공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br/>-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계좌번호 포함</li> <li>• 피보험자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중복보험 확인용도) 및 등재인 각각의 개인[신용]정보처리</li> </ul> |

| 구분 | 구비서류  |
|----|---|
|    | <p>동의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금청구권자가 타인에게 위임할 경우 : 위임장,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li> <li>• 피해자(또는 피해물 소유자) 신분증 사본 및 개인 [신용]정보처리동의서</li> <li>• 사고경위서 -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히 작성</li> </ul> |

○ 대인

| 구분   | 구비서류  |
|------|---|
| 치료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자 신분증 사본</li> <li>• 진단서 또는 초진차트(진단명 명시)</li> <li>• 진료비계산서(영수증)</li> <li>• 입퇴원확인서(입원시)</li> <li>• 상급병실 사용 확인서(법정전염병 또는 중환자로서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 지급)</li> <li>• 개호소견서</li> <li>• 향후 치료비 추정서(치료 현재시점 이후에 지속적 가료를 요하는 경우)</li> </ul>              |
| 휴업손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자 소득 입증자료(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최근 3개월간 임금 대장, 근로계약서)</li> </ul>  |
| 후유장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유장해 진단서(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li> </ul>   |
| 사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원본 또는 사본(원본대조필 포함)<br/>: 사본의 경우 피보험자 기본증명서(사망사실 기재) 첨부</li> <li>※ (수익자 미지정시) 추가 요청서류</li> <li>• 상속관계 확인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li> <li>•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br/>: 상속인 각각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li> </ul> |

○ 대물

| 구분 | 구비서류   |
|----|--|
| 공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물 내역서 및 피해입증서류(수리비견적서 또는 수리불가시 수리불가 확인서, 영수증 등)</li> <li>• 현장사진</li> <li>• 피해물 파손사진 및 수리사진</li> <li>• 피해물의 등록증 (차량등록증, 건물등기부등본 등)</li> <li>•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국과수 등)에 접수된 경우 사고사실확인서</li> </ul> |
| 차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량등록증</li> <li>• 사업자등록증, 가해자의 재직증명서 및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li> <li>• 유류대 영수증</li> </ul>   |

※ 보험금 청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 (<http://www.kbinsure.c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당사 방카슈랑스콜센터(☎ : 1544-0116)를 참고 바랍니다.

## 8. 보험금 청구시 알아 두셔야 할 내용

### 1. 보험금 지급조사 요청에 대한 동의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조사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보험금 지급지연 안내

- **(보험금 지급지연 안내)**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서면 통지하여 드립니다. 또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보험금 지급지연 이자) 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에 지연기간에 따른 가산이율(『보험금 등 지급시의 적립이율 안내』 참조)을 더하여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3. 주소변경 통지

-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역을 회사에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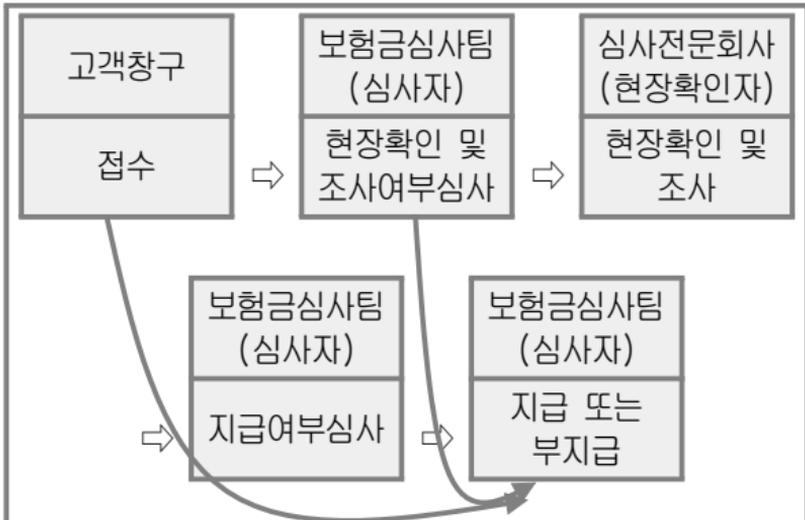
### 4. 보험금 등의 소멸시효

- 보험금청구권, 만기환급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청구권,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 및 배당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9. 주요 안내 내용

1. 접수하신 보험금 청구서류가 심사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할 경우에는 서류를 추가요청 드릴 수 있습니다.
2. 현장확인 대상건의 경우 KB손해보험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보험금 지급심사 진행과정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 : [www.kbinsure.co.kr](http://www.kbinsure.co.kr))
3. 보험금 청구시 문자서비스(SMS)로 각종정보(담당자 및 연락처, 제지급금 등)를 제공하여 드리고, 상세안내를 원하시는 경우 팩스나 이메일(전자우편) 발송에 동의하여 주시면 상세정보(제지급금, 각종안내, 보험금처리 진행과정 등)를 요청하신 방법으로 제공하여 드립니다.
4. 만일 보험금 청구서류에 허위가 있다면 관련 법률 및 약관 규정에 의거하여 보험금 청구권이 상실되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5. KB손해보험의 보험금 부지급 결정 및 보험금 결정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KB손해보험 방카슈랑스콜센터로 통보하시면 재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0. 보험금 지급 심사 절차



※ 보험업 감독규정 中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인가 등을 받은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제 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제 3자의 업무를 수탁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기 서류 이외에도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보상담당자가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위 서류들은 다른 서류로 대체될 수 있으니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구비서류에 해당하는 보장내용은 현재 판매하지 않는 담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입하신 보험상품의 보장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 등 지급시의 적립이율 안내

| 구 분  | 적립기간                           | 적립이율                                  |
|--|--------------------------------|---------------------------------------|
| 승낙거절로<br>제1회 보험료 반환  | 보험료를 받은 기간                     | 평균공시이율 + 1%<br>(단, 신용카드<br>매출은 이자 없음) |
| 청약 철회로<br>기납입보험료 반환  | 보험료 반환기일<br>다음날부터<br>반환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br>(단, 신용카드<br>매출은 이자 없음)    |
| 계약 취소로<br>기납입보험료 반환  | 보험료를 받은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 계약무효로<br>기납입보험료 반환<br>(회사의 고의/과실로<br>계약무효 또는<br>회사가 승낙 전에<br>무효를 알았으나<br>보험료를 반환하지<br>않은 경우) | 보험료납입<br>다음날부터<br>반환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 보통약관 및<br>특별약관<br>보장보험금  | 지급기일의 다음<br>날부터<br>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  | 지급기일의 31일<br>이후부터<br>6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br>가산이율(4.0%)              |
|  | 지급기일의 61일<br>이후부터<br>9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br>가산이율(6.0%)              |
|  | 지급기일의 91일<br>이후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br>가산이율(8.0%)              |

| 구 분       | 적립기간                                      |  | 적립이율     |                |
|-----------|---|--|----------|----------------|
| 해지<br>환급금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br>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  | 1년<br>이내 | 평균공시이율의<br>50% |
|           |   |  | 1년<br>초과 | 1%             |
|           | 청구일의 다음날부터<br>지급일까지의 기간                   |  | 보험계약대출이율 |                |
| 만기보<br>험금 | 지급사유가<br>발생한 날의<br>다음날부터<br>청구일까지<br>의 기간 | 회사가 보험금의<br>지급시기 7일<br>이전에 지급사유와<br>지급금액을 알린<br>경우     | 1년<br>이내 | 평균공시이율의<br>50% |
|           |   | 회사가 보험금의<br>지급시기 7일<br>이전에 지급사유와<br>지급금액을 알리지<br>않은 경우 | 1년<br>초과 | 1%             |
|           | 청구일의 다음날부터<br>지급일까지의 기간                   |  | 평균공시이율   |                |
|           | 청구일의 다음날부터<br>지급일까지의 기간                   |  | 보험계약대출이율 |                |

- 주1)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여, 소멸시효(상법 제 662조)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주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3) 보험료 반환기일 : 청약 철회 접수일부터 3일
- 주4) 지급기일
- 신체손해 보험금 :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일부터 3영업일
  - 재물손해/배상책임손해 보험금 : 지급보험금 결정일부터 7일
  - 해지환급금 : 청구 접수일부터 3영업일
- 주5) 금리연동형보험의 경우 상기 평균공시이율은 적립순보험료에 대한 적립이율을 말합니다
- 주6) 가산이율 적용시 상해·질병 및 비용관련 보통약관 『보험금의 지급절차』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주7)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자주 발생하는 민원(예시)

---

---

### ○ 해지환급금 과소

- 민원 : 홍길동 계약자는 계약 후 1년경과 후에 계약을 해지하였는데, 해지 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어 이에 대한 불만을 제기
- 해설 : 보험계약은 은행의 예적금과 달리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경비로 사용되고 또 다른 일부는 다른 피보험자의 보험금 재원으로 사용되므로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 중도인출시 만기환급금 또는 해지환급금 과소

- 민원 : 홍길동 계약자는 보험가입 후 5년이 경과하여 중도인출을 일부 실시하였고, 이후 만기가 도래하여 만기환급금을 수령하였을 때 환급금이 적은 것에 대한 불만 제기
- 해설 : 중도인출은 기본계약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에서 인출하게 되는 금액으로 중도인출 받은 금액만큼 차감한후 적립됩니다. 따라서, 중도인출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만기환급금 (또는 해지환급금)은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 ○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및 만기환급금 변동 관련

- 민원 : 홍길동 계약자는 가입당시 만기환급율을 99%로 설계하였으나, 실제 만기시 환급율이 88%로 감소됨에 따른 불만 제기
- 해설 : 적립부분 적용이율이 공시이율에 연동되는 경우 (금리연동형)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을 적립하게 됩니다. 공시이율은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중 지표금리 등에 연동되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만기환급금의 재원인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변경

- 민원 : 홍길동 피보험자는 일반 사무직으로 근무하던 중 보험을 가입하고 몇 년 후 직업을 변경하여 오토바이 배달원으로 직업을 변경하였으나 이를 보험

회사에 알리지 않았고, 일반상해로 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금이 약정한 보험금보다 적은 것에 대해 불만 제기

- 해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운전자가 영업용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 변경 포함)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 보험용어 해설

---

---

- **보험약관** : 보험계약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 **보험료**
  - 1) **보장보험료** :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하는 보험료
  - 2) **적립보험료** :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
  - 3) **적립부분 순보험료** : 적립보험료에서 정해진 사업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
  
- **보험금** : 피보험자의 사망, 장애, 입원, 만기, 재물손해, 배상책임손해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보험가입금액** : 보험금,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나이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지 않고 계약자가 보험료를 선택하는 보험에서는 보험료 수준에 따라 보험금, 준비금(적립액) 등이 결정됨
  
- **책임준비금** :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 **보장개시일** : 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 **보험계약일** : 계약자와 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일, 철회산정기간의 기준일

---

---

## 가입자 유의사항

---

---

### ■ 보험계약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 1. 보험계약관련 유의사항

##### ○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 ○ 부활(효력회복)

-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15세 미만 피보험자인 경우는 부활일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 상해 및 질병관련 보장

- 이 보험이 상해 등 외래의 사고만을 보험금지급대상으로 하는지, 질병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하는지, 몇 세까지 보장하는지 등 구체적인 보험금지급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갱신형인 경우 갱신될 때마다 보험료가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습니다.

##### ○ 재물 및 배상책임 관련 보장

-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을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갱신형 보장

- 회사는 갱신형보장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계약자가 납입하여야 하는 갱신될 계약의 보험료 및 계약의 연장여부를 묻는 통지를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 해당 보장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전일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해당 보장은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 회사는 갱신계약에 대하여 갱신일 현재의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를 반영하여 계산된 보험료를 적용하며, 그 보험료는 나이의 증가, 보험료산출에 관한 기초율의 변동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갱신형보장의 약관은 최초 계약시의 약관을 계속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법령의 제개정, 금융위원회의 명령,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시행세칙의 개정 등 제도적인 변경에 따라 약관이 변경된 경우 갱신일 현재의 변경된 약관을 적용합니다.

## 2. 해지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모집수수료, 계약유지관리비용 등)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적립이율이 변동하는 경우 변동이율(공시이율, 보험계약대출이율 등)에 따라 환급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보험금 지급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 ○ 암 관련 보장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암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 90일이 지난 이후에도 암 진단일이 보험계약일로부터 일

정기간(예 : 1년 등)이내인 경우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 암은 원칙적으로 조직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미세한 침을 이용한 생체검사 방법)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한 진단만 인정됩니다.
- 항암방사선 및 항암약물치료는 암수술비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 ○ 특정질병 관련 보장

- 암, 이보험 등 특정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은 약관이나 별 표에 나열되어 있는 질병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이 관련 보장

- 이관련보장은 전체 질병이 아닌 중대한 암 등 약관에서 정하는 특정한 질병만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하므로, 중대한 질병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수술 관련 보장

-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조작의 경우(예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처치, 바늘 등을 통해 체액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입원 관련 보장

-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 상해 관련 보장

- 질병이나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상해관련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 법령연계 관련 담보

- 법령에 연계하여 보장하는 담보의 경우(예 : 장기요양간병비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여 보장합니다.
- 관련 법령이 폐지 또는 변경되어 보상하는 손해의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폐지 또는 변경직전의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장하거나 보장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재물손해, 배상책임 관련 담보 등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에서 담보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어린이보험**

- 피보험자가 만15세 미만에 사망시 보험계약은 소멸하며, 해당 계약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 **태아보험**

- 피보험자가 출생전 자녀(태아)인 경우 출생시 피보험자로 합니다.
- 태아가 복수로 출생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피보험자 각각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보험**

- **실손의료보험의 보상내용**

• **실손의료보험(노후실손의료보험 제외)**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보험상품은 상해입원형, 상해통원형, 질병입원형 및 질병통원형 등 총 4개의 담보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담보종목 |    | 보상하는 내용   |
|------|----|---|
| 상해   | 입원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            |
|      | 통원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
| 질병   | 입원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           |
|      | 통원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

• 노후실손의료보험

회사가 판매하는 노후실손의료보험상품은 노후실손의료비(상해형), 노후실손의료비(질병형), 요양병원실손의료비, 상급병실료차액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담보종목           | 보상하는 내용  |
|----------------|--|
| 노후실손의료비(상해형)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요양병원 및 조산원 제외)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
| 노후실손의료비(질병형)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요양병원 및 조산원 제외)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
| 요양병원실손의료비(통합형) |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
| 상급병실료차액보장(통합형) |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상급병실료 차액의 50%를 보상          |

- 실손의료보험의 자동갱신 및 보험료 변동

실손의료보험은 위험율에 따라 매년 보험료가 변동되는 상품입니다. 회사는 보험료 변경주기 만료 15일 전까지 변경된 보험료를 안내합니다. 계약자가 보험료 변경주기 만료일의 전일까지 보험료 변경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갱신거절 및 계약해지 등)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으

로 유지됩니다.

#### - 실손의료보험의 비례보상

실손의료보험은 실제 의료비를 보상하는 상품으로서 2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및 보상책임액에 따라 비례보상되므로 유사한 보험가입 여부 및 보상한도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여러 개의 보험에 중복가입하는 경우 불필요하게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 - 실손의료보험의 자기부담금 공제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의료비를 보상하는 상품으로, 보상대상 의료비에 대해 일정율 또는 일정금액의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실손의료보험의 재가입

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계약자가 보장내용 변경주기(최대 15년) 만료일 전까지 재가입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1) 재가입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나이는 99세 이내로 하고 갱신종료나이는 100세 이내로 함. 다만, 재가입 시점에 회사가 정한 나이가 100세 이상, 갱신종료나이가 101세이상으로 될 경우에는 그를 따릅니다.

(2) 재가입 전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 완료 되었을 것

나) 위 가) 에도 불구하고 자동갱신 및 재가입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은 보통약관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과 실손의료보험의 갱신종료나이에 해당하는 보험기간 종료일 중 적은기간까지로 합니다.

다) 계약자가 재가입을 원하는 경우 계약자는 재가입 시점에서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보험종목에서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절 할 수 없습니다.

## - 노후실손의료보험의 재가입

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계약자가 보장내용 변경주기(최대3년) 만료일 전까지 재가입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1) 재가입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나이는 99세 이내로 하고 갱신종료나이는 100세 이내로 함. 다만, 재가입 시점에 회사가 정한 나이가 100세 이상, 갱신종료나이가 101세이상으로 될 경우에는 그를 따릅니다.

(2) 재가입 전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 완료 되었을 것

나) 위 가) 에도 불구하고 자동갱신 및 재가입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은 보통약관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과 노후실손보험의 갱신종료나이에 해당하는 보험기간 종료일 중 적은기간까지로 합니다.

다) 계약자가 재가입을 원하는 경우 계약자는 재가입 시점에서 회사가 판매하는 노후실손의료보험 상품에서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절 할 수 없습니다.

이 가입자 유의사항은 공통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보통약관, 특별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

---

## 주요내용 요약서

---

---

### 1. 자필서명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2. 청약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납입한 첫 회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3. 계약취소

계약자가 청약을 할 때에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을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4. 계약의 무효(신체관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

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 5. 계약의 무효(재물관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6. 계약의 소멸(신체 관련)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이 보험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7. 계약의 소멸

### 1) 계약의 소멸(화재손해 관련)

사고보험금이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을 한도로 함)의 80%를 넘을 때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보험목적에 대한 계약은 소멸됩니다.

### 2) 계약의 소멸(화재실손손해 관련)

사고보험금이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을 한도로 함) 이상인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보험목적에 대한 계약은 소멸됩니다.

## 8.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14일(보험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7일)이상의 기간을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 9.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0. 중도인출

계약일로부터 약관에서 정한 일정기간 이상 지난 계약으로서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자가 요청한 시점의 기본계약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 중 약관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중도인출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중도인출금의 요청은 약관에서 정한 횟수로 제한됩니다.

## 11. 계약 전 · 후 알릴 의무

- 1) 계약 전 알릴의무 : 계약자,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공인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단,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음성녹음으로 대체합니다.)
  - 2) 계약 후 알릴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변경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되는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보험목적물을 양도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경우, 기타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
  - 3) 알릴의무 위반시 효과 :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즉시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12. 보험금의 지급절차(신체 관련)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리며 지급예정일은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만약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에 지연기간에 따른 가산이율(『보험금 등 지급시의 적립이율 안내』 참조)을 더하여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 13. 보험금의 지급절차(배상책임 관련)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만약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체된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에 지연기간에 따른 가산이율(『보험금 등 지급시의 적립이율 안내』 참조)을 더하여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 14. 보험금의 지급절차(재산손해 관련)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만약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에 지연기간에 따른 가산이율(『보험금 등 지급시의 적립이율 안내』 참조)을 더하여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 15.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이 주요내용 요약서는 공통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보통약관, 특별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 상품 안내

상품안내는 계약자의 편의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상품의 주요내용만을 요약한 자료이므로, 자세한 구체적인 상품 내용은 반드시 약관 본문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 가입자격제한 등 상품별 특이사항

#### 1) 가입자격제한

##### 가. 1종(건강플랜)

| 구분   | 보험<br>기간 | 보험료<br>납입기간             | 가입<br>나이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요양간병비(1~4급)</li> <li>▪ 장기요양간병비(1~2급)</li> <li>▪ 장기요양간병비(1급)</li> <li>▪ 일반상해사망</li> <li>▪ 일반상해후유장해</li> <li>▪ 암진단비(유사암제외)</li> <li>▪ 유사암진단비</li> <li>▪ 뇌졸중진단비</li> <li>▪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li> </ul> | 110세만기   | 5년<br>10년<br>15년<br>20년 | 만15세<br>~60세 |

##### 나. 2종(장기간병플랜)

| 구분  | 보험<br>기간 | 보험료<br>납입기간 | 가입<br>나이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요양간병비(1~4급)</li> <li>▪ 장기요양간병비(1~2급)</li> <li>▪ 장기요양간병비(1급)</li> <li>▪ 일반상해사망</li> <li>▪ 일반상해후유장해</li> <li>▪ 일반상해사망가족생활지원<br/>금(10년매년지급형)</li> </ul> | 110세만기   | 5년<br>10년   | 만15세<br>~70세                    |
|   |          | 15년<br>20년  | 만15세<br>~<br>(80-납<br>입기간)<br>세 |

다. 3종(장기간병월지급플랜)

| 구분  | 보험<br>기간 | 보험료<br>납입기간 | 가입<br>나이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요양간병지원금(1~4급)(5년매월지급형)</li> <li>▪ 장기요양간병지원금(1~2급)(5년매월지급형)</li> <li>▪ 장기요양간병지원금(1급)(5년매월지급형)</li> <li>▪ 일반상해사망</li> <li>▪ 일반상해후유장해</li> <li>▪ 일반상해사망가족생활지원금(10년매년지급형)</li> </ul> | 110세만기   | 5년<br>10년   | 만15세<br>~70세                    |
|   |          | 15년<br>20년  | 만15세<br>~<br>(80-납<br>입기간)<br>세 |

라. 4종(실버플랜)

| 구분  | 보험<br>기간 | 보험료<br>납입기간 | 가입<br>나이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요양간병비(1~4급)</li> <li>▪ 장기요양간병비(1~2급)</li> <li>▪ 장기요양간병비(1급)</li> <li>▪ 일반상해사망</li> <li>▪ 일반상해후유장해</li> <li>▪ 일반상해사망가족생활지원금(10년매년지급형)</li> <li>▪ 화상진단비</li> <li>▪ 상해흉터복원수술비</li> <li>▪ 김스치료비</li> </ul> | 110세만기   | 5년<br>10년   | 만15세<br>~70세                    |
|   |          | 15년<br>20년  | 만15세<br>~<br>(80-납<br>입기간)<br>세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li> <li>▪ 각막이식수술비</li> </ul>   | 80세만기    | 5년<br>10년   | 만15세<br>~70세                    |
|   |          | 15년<br>20년  | 만15세<br>~<br>(80-납<br>입기간)<br>세 |

주) 단,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연령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 □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

- ① 피보험자의 직업 및 과거병력 등 청약서상 기재내용은 계약인수 및 보상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청약시 빠짐없이 사실 그대로를 본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확인하여야 합니다.
- ②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과거 사고유무, 건강상태,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진단 결과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③ 이 보험은 보험업법 제91조에 정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판매를 통한 계약에 한정함
- ④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 당시 또는 보험기간 중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함으로 인하여 이륜자동차의 운전과 관련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 상해를 입을 위험정도가 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짐. 이륜자동차의 운전자가 이륜자동차 운전중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을 부가시에는 이륜자동차 운전을 제외한 직업 또는 직무에 해당하는 상해급수를 적용함.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소유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음

## 2) 상품의 특이사항

□ (보장부분) 적용이율 : 2.75%

□ (적립부분) 공시이율 : 「보장성-1601 공시이율」  
(단, 최저보증이율 연복리 1.0%)

□ 평균공시이율 : 3.5%

□ 보험기간, 납입기간 :  
“ 가입자격제한 ” 의 표와 같이 적용함

□ 납입주기 : 월납, 연납

## □ 만기환급금에 관한 사항

적립순보험료를 이 상품의 「보장성-1601 공시이율」로 만기시까지 적립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이 약관에 정한 대출금 또는 중도인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원금과 이자 합계액을 빼고 지급하여 드립니다.

## □ 선납보험료에 관한 사항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낼 수 있으며, 이 경우 선납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적립보험료는 이 보험의 공시이율로 적립하여 드리고, 3개월 이상의 보험료를 미리 낼 때에는 보장보험료에 한하여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함

## □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 ①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2년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자가 요청한 시점에서 계산된 기본계약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이 계약에서 정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차감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의 80%범위 내에서 중도인출 할 수 있음.  
단, 중도인출은 보험기간 내에 한하며, 보험연도 기준 연 12회에 한함.
- ② ①에도 불구하고 중도인출액의 총 누적액의 한도는 기본계약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에서 중도인출을 한번도 하지 않았을 때의 ①에서 정한 한도를 기준으로 함.
- ③ 중도인출시 만기환급금 또는 해지환급금에서 중도인출액 및 중도인출금액에 적립되었을 이자만큼 차감되므로 환급금이 감소함

## □ 장래제휴서비스 부가에 관한 사항

- ① 본 서비스는 회사가 정한 서비스 부가 기준을 충족하는 이 보험의 가입자가 가입할 수 있음
- ② 본 서비스는 회사가 제휴를 맺는 “서비스제공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회사가 제휴를 맺은 “서비스제공회사”가 짐
- ③ 단, 본 서비스는 대외환경 변화로 인해 향후 서비스 내용 및 제공방법이 변경되거나 중지될 수 있음

## □ 장기요양간병비 및 장기요양간병지원금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 ①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장기요양상태의 판정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장기요양상태 판정시점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기요양상태 판정기준이 폐지되거나 이 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및 기타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계약내용에 상응하는 “장기요양상태”와 관련된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며,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②와 같이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② 계약내용 변경에 대한 안내 절차

회사는 ①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계약내용 변경일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취)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계약내용 변경 절차 등을 2회 이상 계약자에게 알립니다.

### ③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계약내용 변경에 대한 계약자 확인

회사는 계약 체결 시 계약자에게 ①에 대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하고 별도의 확인을 받습니다.

1) 계약내용 변경으로 보장내용 및 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음

2) 계약내용 변경으로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음

### ④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기초율 변경

회사는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장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최신의 통계를 반영하여 보험료산출기초율을 재산출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1) ①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내용 변경일부터 재산출된 보험료산출기초율을 적용함

2) 재산출된 보험료산출기초율이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①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되지 않더라도 이미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보험료의 인하 또는 보험금을 증액할 수 있음

## □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 연체된 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율은 보장보험료는 평균 공시이율 + 1%이내에서 적용하며, 적립보험료는 적용하지 않음

□ 주요 용어의 해설

① 유사암의 정의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보장용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및 지급제한사항

1)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 1종(건강플랜)

| 보장급부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장기요양간병비<br>(1~4급) | 보험기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2등급, 3등급 또는 4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었을 경우 | 가입금액<br>(최초1회한) |
| 장기요양간병비<br>(1~2급) | 보험기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또는 2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었을 경우           | 가입금액<br>(최초1회한) |
| 장기요양간병비<br>(1급)   | 보험기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었을 경우                  | 가입금액<br>(최초1회한) |
| 일반상해사망            | 보험기간 중 상해로 사망시  | 가입금액            |
| 일반상해<br>후유장해      | 보험기간 중 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            |
|                   | 보험기간 중 상해로 80%미만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br>x지급률    |

| 보장급부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암진단비<br>(유사암 <sup>주1)</sup><br>제외) | 암보장개시일 <sup>주2)</sup>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1년 미만 50%지급)     | 가입금액<br>(최초1회한) |
| 유사암진단비                             |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1년 미만 50%지급) | 가입금액<br>(각각1회한) |
| 뇌졸중진단비                             |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br>(1년 미만 50%지급)                        | 가입금액<br>(최초1회한) |
| 급성심근경색증<br>진단비                     |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1년 미만 50%지급)                        | 가입금액<br>(최초1회한) |

주1) 유사암이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을 말합니다.

주2)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단, 유사암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입니다.)

## □ 2종(장기간병플랜)

| 보장급부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장기요양간병비<br>(1~4급) | 보험기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2등급, 3등급 또는 4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었을 경우 | 가입금액<br>(최초1회한) |
| 장기요양간병비<br>(1~2급) | 보험기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또는 2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었을 경우           | 가입금액<br>(최초1회한) |
| 장기요양간병비<br>(1급)   | 보험기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었을 경우                  | 가입금액<br>(최초1회한) |

| 보장급부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일반상해사망                              | 보험기간 중 상해로 사망시            | 가입금액                             |
| 일반상해<br>후유장해                        | 보험기간 중 상해로 80%이상<br>후유장해시 | 가입금액                             |
|                                     | 보험기간 중 상해로 80%미만<br>후유장해시 | 가입금액<br>x지급률                     |
| 일반상해사망<br>가족생활지원금<br>(10년매년지급<br>형) | 보험기간 중 상해로 사망시            | 가입금액의<br>10%×10회<br>(매년확정<br>지급) |

□ 3종(장기간병월지급플랜)

| 보장급부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장기요양간병<br>지원금(1~4급)<br>(5년매월지급형) | 보험기간 중 국민건강보험공<br>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br>등급, 2등급, 3등급 또는 4등<br>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br>받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br>대상으로 인정되었을 경우 | 가입금액<br>x60회<br>(매월확정<br>지급)<br>(최초1회한) |
| 장기요양간병<br>지원금(1~2급)<br>(5년매월지급형) | 보험기간 중 국민건강보험공<br>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br>등급 또는 2등급」의 장기요<br>양등급을 판정받아 노인장기<br>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br>되었을 경우           | 가입금액<br>x60회<br>(매월확정<br>지급)<br>(최초1회한) |
| 장기요양간병<br>지원금(1급)<br>(5년매월지급형)   | 보험기간 중 국민건강보험공<br>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br>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br>정받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br>급대상으로 인정되었을 경우                      | 가입금액<br>x60회<br>(매월확정<br>지급)<br>(최초1회한) |
| 일반상해사망                           | 보험기간 중 상해로 사망시  | 가입금액                                    |
| 일반상해<br>후유장해                     | 보험기간 중 상해로 80%이상<br>후유장해시   | 가입금액                                    |
|                                  | 보험기간 중 상해로 80%미만<br>후유장해시   | 가입금액<br>x지급률                            |
| 일반상해사망<br>가족생활지원금                | 보험기간 중 상해로 사망시  | 가입금액의<br>10%×10회                        |

| 보장급부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10년매년지급형) |      | (매년확정지급) |

#### □ 4종(실버플랜)

| 보장급부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장기요양간병비<br>(1~4급)               | 보험기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2등급, 3등급 또는 4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었을 경우 | 가입금액<br>(최초1회한)              |
| 장기요양간병비<br>(1~2급)               | 보험기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또는 2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었을 경우           | 가입금액<br>(최초1회한)              |
| 장기요양간병비<br>(1급)                 | 보험기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었을 경우                  | 가입금액<br>(최초1회한)              |
| 일반상해사망                          | 보험기간 중 상해로 사망시  | 가입금액                         |
| 일반상해<br>후유장해                    | 보험기간 중 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                         |
|                                 | 보험기간 중 상해로 80%미만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br>x지급률                 |
| 일반상해사망<br>가족생활지원금<br>(10년매년지급형) | 보험기간 중 상해로 사망시  | 가입금액의<br>10%×10회<br>(매년확정지급) |
| 화상진단비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   | 가입금액                         |

| 보장급부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 로써 화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1사고당)   |      |
| 상해흉터<br>복원수술비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흉터)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1사고당) | 가입금액 |
| 깁스치료비          |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의 직접결과로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 가입금액 |
| 조혈모세포<br>이식수술비 |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수혜자로서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았을 때 (최초 1회)   | 가입금액 |
| 각막이식수술비        |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장기수혜자로서 각막이식수술을 받았을 때 (최초 1회)  | 가입금액 |

※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 ①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 회사는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을 때부터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상기에도 불구하고 암관련 보장에 대한 회사의 보장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적용합니다. 단, 계약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
- ② 보장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 내용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3. 보험료산출기초 및 공시이율

#### □ 보험료의 구성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 만기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적립보험료, 보험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보험료 등으로 구성됩니다.

#### □ 적용이율

##### 보장부분 적용이율이란?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이 기간 동안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 할인율을 “보장부분 적용이율” 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장부분 적용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 적립부분 적용이율(공시이율) 이란?

적립부분 적용이율(공시이율)이란 보험회사가 장래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계약자의 납입보험료의 일정부분을 적립해 나가는데, 이 적립금을 부리하는 이율을 의미합니다.

##### 최저보증이율이란?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 ① 이 상품의 보장부분 적용이율은 연복리 2.75%입니다.
  - ② 이 상품의 적립순보험료에 대한 적용이율은 이 보험의 「보장성-1601 공시이율」 (매월변동)에 연동됩니다.
    - 『보장성-1601 공시이율』은 매월 마지막날 회사가 정한 이율을 말하며, 회사는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sup>주1)</sup>와 운용자산이익률<sup>주2)</sup>을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sup>주3)</sup>을 가감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하며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합니다.
- 주1) 외부지표금리는 국고채, 회사채, 통화안정증권, 양도성예금증서 등을 고려하여 산출
- 주2) 운용자산이익률은 직전 1년간의 운용자산에 대한 투자영업수익과 투자영업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출
- 주3) 조정률을 가감한 공시이율은 공시기준이율의

70%~130% 범위내로 함.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홈페이지 상품공시실에서 해당상품의 사업방법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③ 이 상품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1.0%입니다.

#### □ 적용위험률

##### 적용위험률이란?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위험률이 높으면 보험료가 올라가고 낮으면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 □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험료 중 일정비율을 책정한 것을 말합니다.

**보통약관**  
**1종(건강플랜), 2종(장기간병플랜)**  
**3종(장기간병월지급플랜), 4종(실버플랜)**

**제1절 일반조항**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 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 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만기환급금 지급시기에 만기환급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 가.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 나. 장애: **【별표2】(장애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 다. 중요한 사항: 계약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다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 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를 말하며,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해당 질병(항목)이외의 추가로 이에 해당하는 질병(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 나. 평균공시이율 :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 다. 해지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 제2관 보험금의 지급

###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절, 제3절, 제4절 내지 제5절의 보장조항을 따릅니다.

### 제4조(보장보험료 납입면제)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제2절, 제3절 내지 제5절의 장기요양간병비(1~4급) 보장조항 또는 제4절의 장기요양간병지원금(1~4급)(5년매월지급형) 보장조항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하고 계약이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의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차회 이후의 적립보험료 납입은 중지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장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에 보험료 납입 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하지 않은 경우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④ 제2절, 제3절 내지 제5절의 장기요양간병비(1~4급) 보장조항 또는 제4절의 장기요양간병지원금(1~4급)(5년매월 지급형) 보장조항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 의한 보장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절, 제3절, 제4절 내지 제5절의 보장조항을 따릅니다.

###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

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제7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제8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수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한다. 의료기관의 종별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 집니다.

### 제9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8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

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 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6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③ 제2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확정된 장해지급률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지급합니다.

④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1】 참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 확인

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⑦ 회사는 제6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① 회사는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 만기환급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의한 만기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의한 만기환급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만기환급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별표1】 참조)에 따릅니다.

④ 회사는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차감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대하여 보험료납입일(보험료가 회사에 입금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이 보험의 「보장성-1601 공시이율」(이하 『공시이율』 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적립한 금액(적립한 금액에서 중도인출액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원금과 이자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제4항의 공시이율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된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1. 『보장성-1601 공시이율』은 매월 마지막날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다음달 1일부터 마지막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2. 회사는 외부지표금리와 운용자산이익률을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공시기준이율의 70%~130% 범위 내에서 보장성-1601 공시이율을 결정합니다.
3. 보장성-1601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1.0%를 적용합니다.
4. 세부적인 보장성-1601 공시이율의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보장성-1601 공시이율 적용에 관한

지침”을 따릅니다.

⑥ 회사는 제4항 및 제5항의 『보장성-1601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을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매월 공시합니다.

⑦ 계약자가 제37조(중도인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중도인출시 만기환급금에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용되었을 이자만큼 차감되므로 만기환급금이 감소합니다.

#### 【공시이율】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이 장기·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시중의 지표금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간 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적립금이 공시이율에 따라 적립되며 공시이율이 0.75%인 경우(최저보증이율은 1.0%일 경우), 적립금은 공시이율(0.75%)이 아닌 최저보증이율(1.0%)로 적립됩니다.

#### 【사업방법서】

회사가 보험사업의 허가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하는 기초서류의 하나로서, 피보험자의 범위, 보험금액 및 보험기간에 대한 제한 등이 기재된 서류를 말합니다. 각 상품별 사업방법서 별지는 당사 인터넷홈페이지의 상품공시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11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제12조(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 제13조(보험수익자의 지정)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1항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사망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하며, 이외의 보험금은 피보험자로 합니다.

### 제14조(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의무 등

### 제15조(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내지 제3조의2(병원등)의 규정에 의한 병원 : 30개 이상의 병상(또는 요양병상)을 갖춘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또는 요양병원)
-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내지 제3조의3(종합병원)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 100개 이상의 병상 구비, 병상수에 따라 일정 개수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제16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증가하거나 감소되는 경우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내용 변경시점 이후 잔여 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 (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④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납입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 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항에 의해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제1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 15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6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최초 계약 체결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최초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3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⑤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6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⑦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⑧ 제30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계약(보장)이 부활(효력회복)된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제2항의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또한, 부활(효력회복)이 여러차례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의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최초 계약으로 봅니다.

#### 제18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 4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 제19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 +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20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③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대출이율】

계약자는 해당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보험계약대출” 이라 합니다. 이 때 적용되는 이율을 “보험계약대출이율” 이라 하며,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합니다. 보험계약대출은 순수보장성 상품 등 보험상품의 종류 및 보험계약 경과기간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 제21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자필서명】**

계약자가 성명기입란에 본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란에 사인(signature) 또는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합니다.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 **제22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

약자(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심신상실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라 함은 의식은 있으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자신의 행위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 **【심신박약자】**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심신상실의 상태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마음이나 정신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을 말합니다.

### **제23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5. 보험가입금액, 보험료(적립보험료를 포함합니다) 등 기타 계약의 내용
-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 ④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 변경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최초 지정된 보험수익자(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 사망보험금 이외는 피보험자로 합니다)의 권리가 확정됩니다. 그러나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그 승계인이 보험수익자 변경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승계받은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⑦ 제1항에 따라 위험이 증가하거나 감소되는 경우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내용 변경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 (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⑧ 제1항에 따라 보험료 등의 감액 또는 증액시 환급금이 없거나 최초가입시 안내한 만기(해지)환급금보다 적거나 많아질 수 있습니다.

####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제24조(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2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 해당 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 2016년 4월 13일  
⇒ 2016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7년 6월 11일 = 28세

**【계약해당일】**

최초계약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합니다.  
예시) 계약일: 2016년 10월 1일  
⇒ 계약해당일: 10월 1일

**제25조(계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적립한 금액에서 중도인출액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원금과 이자 합계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보장의 소멸에 대한 책임준비금 환급은 제2절, 제3절, 제4절 내지 제5절의 보장조항을 따릅니다.

**【사망에 관한 세부규정】**

이 보험에서 정하는 사망은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 5 관 보험료의 납입**

**제26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5조(계약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1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상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보험료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의 지급에 필요한 보험료(이하 『보장보험료』라 합니다)와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이하 『적립보험료』라 합니다)로 구성됩니다. (이하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를 합하여 『보험료』라 합니다)

#### **제27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

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 제28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 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6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까지의 이자(보험계약대출이율 이내에서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를 더한 금액이 해당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지환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는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 납입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3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되었음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SMS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30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

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리연동형보험은 각 상품별 사업방법서에서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5조(계약전 알릴의무), 제1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8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9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제26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 제15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 **제31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3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강제집행이란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강제 권력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담보권실행】**

담보권실행이란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하여 해당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국세 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가산금 징수, 독촉장 발부 및 재산 압류 등의 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실행으로 채무자의 해지환급금을 압류할 수 있으며, 법원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시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채무자의 해지환급금이 압류될 수 있으며,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제 6 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 제32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3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22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33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제34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3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35조(해지환급금)

-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별표1】 참조)에 따릅니다.
- ③ 계약자가 제37조(중도인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중도인출시 해지환급금에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었을 이자만큼 차감되므로 해지환급금이 감소합니다.
- ④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 제36조(보험계약대출)

-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

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④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제37조(중도인출)

①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2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약자가 요청한 시점에서 계산된 기본계약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적립한 금액에서 이 계약에서 정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원금과 이자 합계액을 차감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의 80%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중도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중도인출은 보험기간 내에 한하며, 매 보험년도마다 12회에 한합니다.

② 제1항의 중도인출의 총 누적액은 중도인출을 한번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의 기본계약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의 80%를 한도로 합니다.

#### 【보험년도】

당해연도 보험계약 해당일로부터 차년도 보험계약 해당일 전일까지 매1년 단위의 연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일이 8월 15일인 경우 보험년도 기준 매1년은 당해연도 8월 15일부터 차년도 8월 14일까지입니다.

#### 【중도인출금의 한도 예시】

중도인출 시점에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의해 산출된 기본계약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이 100만원인 경우

⇒ 총 중도인출 가능액 = 100만원 × 80% = 80만원

⇒ 기 신청한 대출금이 있는 경우(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10만원으로 가정)

중도인출 가능액 = 80만원(총 중도인출 가능액) - 10만원 = 70만원

### 제38조(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이 보험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7관 지정대리청구에 관한 사항

### 제39조(적용대상)

이 계약의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제40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계약자는 계약체결할 때 또는 계약체결 이후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정대리청구인은 제41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에 의한 변경지정 또는 보험금 청구 시에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39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 제41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보험증권
3.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등)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 제42조(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청구)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
5.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등본
6.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제43조(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 절차)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42조(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청구)에 정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39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8관 분쟁의 조정 등

#### 제44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45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제46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만기환급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청구권 및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제47조(약관의 해석)

-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 제48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 【보험안내자료】

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하여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 제49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제50조(개인정보보호)

-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

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 회사는 계약자 등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등에게 알려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16조(수집·조사 및 처리의 제한) 제2항 : 회사가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목적으로만 그 정보를 이용해야 한다.
-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 회사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식으로 미리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서면
  2.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3. 유무선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4. 유무선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 **제51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 **제52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미리 보험료를 받아 적립해 두었다가 금융기관이 경영 악화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예금자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제2절 1종(건강플랜) 보장조항

### 2-1. 장기요양간병비(1~4급) 보장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었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최초1회에 한하여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장기요양간병비(1~4급)로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었을 경우」라 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2등급, 3등급 또는 4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턴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③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일반조항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④ 일반조항 제30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1. 일반조항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사항
2.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물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3.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 제4조(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내지 제2항의 판정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장기요양상태를 판정하는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계약내용에 상응하는 “장기요양상태”와 관련된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1. 법령의 개정에 따라 “장기요양상태 판정기준”이 폐지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에 따라 “장기요양상태 판정기준”의 변경으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예시) 장기요양상태 판정기준이 현행 1~4등급에서 신체장애등급과 정신장애등급으로 변경되는 경우 등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회사의 전환한 경영을 크게 해칠 수가 있거나 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계약내용 변경일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취)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계약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려드립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내용 변경

시점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⑤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⑥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제5조(보장의 소멸)

①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장기요양간병비(1~4급)가 지급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보장은 소멸되며 이 보장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하지 않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보장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보장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보장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 2-2. 장기요양간병비(1~2급) 보장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었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최초1회에 한하여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장기요양간병비(1~2급)로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었을 경우」라 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또는 2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③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일반조항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④ 일반조항 제30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1. 일반조항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사항
2.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3.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 제4조(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내지 제2항의 판정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장기요양상태를 판정하는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계약내용에 상응하는 “장기요양상태”와 관련된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1. 법령의 개정에 따라 “장기요양상태 판정기준”이 폐지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에 따라 “장기요양상태 판정기준”의 변경으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예시) 장기요양상태 판정기준이 현행 1~2등급에서 신체장애등급과 정신장애등급으로 변경되는 경우 등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회사의 전환 경영을 크게 해칠 수가 있거나 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계약내용 변경일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취)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계약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려드립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내용 변경 시점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⑤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⑥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제5조(보장의 소멸)

- ①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장기요양간병비(1~2급)가 지급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보장은 소멸되며 이 보장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하지 않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보장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보장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보장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 2-3. 장기요양간병비(1급) 보장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었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최초1회에 한하여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장기요양간병비(1급)로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었을 경우」라 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③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일반조항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④ 일반조항 제30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1. 일반조항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사항
2.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물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3.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 제4조(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내지 제2항의 판정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장기요양상태를 판정하는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계약내용에 상응하는 “장기요양상태”와 관련된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1. 법령의 개정에 따라 “장기요양상태 판정기준”이 폐지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에 따라 “장기요양상태 판정기준”의 변경으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예시) 장기요양상태 판정기준이 현행 1등급에서 신체장애등급과 정신장애등급으로 변경되는 경우 등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칠 수가 있거나 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

는 경우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계약내용 변경일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취)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계약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려 드립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내용 변경 시점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⑤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⑥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제5조(보장의 소멸)

①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장기요양간병비(1급)가 지급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보장은 소멸되며 이 보장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하지 않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보장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보장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보장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 2-4. 일반상해사망 보장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일반상해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 관계를 확정 시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1.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전지에 임한자, 침몰한 선박중에 있던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 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습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3조(보장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일반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이 보장은 소멸되며 이 보장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하지 않는 사유로 사망하는 경우에는 이 보장도 소멸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보장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4조(준용규정)

이 보장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 2-5. 일반상해후유장해 보장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2】(장해분류표)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80%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2.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80%미만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2】(장해분류표)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

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 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이미 이 보장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⑧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수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의 종별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집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내지 제3조의3(종합병원)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 100개 이상의 병상 구비, 병상수에 따라 일정 개수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제3조(보장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이 보장도 소멸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보장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4조(준용규정)

이 보장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 2-6. 암진단비(유사암 제외) 보장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의 진단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 구 분              | 지 급 금 액             |                      |
|------------------|---------------------|----------------------|
|                  | 보험계약일부<br>1년미만      | 보험계약일부<br>1년이상       |
| 암진단비<br>(유사암 제외) | 이 보장의<br>보험가입금액 50% | 이 보장의<br>보험가입금액 100% |

② 제1항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계약일은



병,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 또는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②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제4조(보장의 무효)**

회사는 일반조항의 제22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이 보장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보장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제5조(보장의 소멸)**

- ①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암』으로 인한 진단비가 지급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보장은 소멸되며 이 보장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보장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보장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6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보장의 보장개시는 일반조항 제30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보험계약일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를 다시 적용합니다.

### 제7조(준용규정)

이 보장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 2-7. 유사암진단비 보장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는 각각 최초 1회의 진단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 구 분       | 지 급 금 액                |                         |
|-----------|------------------------|-------------------------|
|           | 보험계약일부터<br>1년미만        | 보험계약일부터<br>1년이상         |
| 기타피부암 진단비 | 이 보장의<br>보험가입금액<br>50% | 이 보장의<br>보험가입금액<br>100% |
| 제자리암 진단비  |                        |                         |
| 경계성종양 진단비 |                        |                         |
| 갑상선암 진단비  |                        |                         |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질병이

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③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이라 함은 일반조항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④ 일반조항 제30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3조(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보장에 있어서 『기타피부암』 이라 함은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 이 보장에 있어서 『갑상선암』 이라 함은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이 보장에 있어서 『제자리암』 이라 함은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제자리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4】(제자리 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④ 이 보장에 있어서 『경계성종양』 이라 함은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5】(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⑤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제4조(보장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각각 진단받아 유사암진단비를 각 1회씩 총 4회 지급받은 경우 최종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보장은 소멸되며 이 보장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보장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보장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보장의 보장개시는 일반조항 제30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보험계약일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를 다시 적용합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보장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 2-8. 뇌졸중진단비 보장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에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의 진단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뇌졸중진단비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 구 분    | 지 급 금 액             |                      |
|--------|---------------------|----------------------|
|        | 보험계약일부<br>1년미만      | 보험계약일부<br>1년이상       |
| 뇌졸중진단비 | 이 보장의<br>보험가입금액 50% | 이 보장의<br>보험가입금액 100% |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 ③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일반조항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④ 일반조항 제30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3조(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보장에 있어서 『뇌졸중』이라 함은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6】(뇌졸중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뇌졸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 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뇌졸중』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뇌졸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 제4조(보장의 소멸)

- ①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뇌졸중진단비가 지급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보장은 소멸되며 이 보장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보장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보장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보장의 보장개시는 일반조항 제30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보험계약일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를 다시 적용합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보장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 2-9.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보장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의 진단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 구 분            | 지 급 금 액             |                      |
|----------------|---------------------|----------------------|
|                | 보험계약일부<br>1년미만      | 보험계약일부<br>1년이상       |
| 급성심근경색증<br>진단비 | 이 보장의<br>보험가입금액 50% | 이 보장의<br>보험가입금액 100% |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 ③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일반조항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④ 일반조항 제30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3조(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보장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7】**(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 의사 제외)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급성심근경색증』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

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 제4조(보장의 소멸)

①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가 지급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보장은 소멸되며 이 보장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보장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보장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보장의 보장개시는 일반조항 제30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보험계약일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를 다시 적용합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보장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 제3절 2종(장기간병플랜) 보장조항

#### 3-1. 장기요양간병비(1~4급) 보장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었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최초1회에 한하여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장기요양간병비(1~4급)로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었을 경우」라 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2등급, 3등급 또는 4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

정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③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일반조항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④ 일반조항 제30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1. 일반조항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사항
2.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물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3.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 제4조(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내지 제2항의 판정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 이

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장기요양상태를 판정하는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계약내용에 상응하는 “장기요양상태”와 관련된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1. 법령의 개정에 따라 “장기요양상태 판정기준”이 폐지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에 따라 “장기요양상태 판정기준”의 변경으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예시) 장기요양상태 판정기준이 현행 1~4등급에서 신장애등급과 정신장애등급으로 변경되는 경우 등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칠 수가 있거나 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계약내용 변경일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취)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계약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려드립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내용 변경 시점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⑤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⑥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제5조(보장의 소멸)

①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장기요양간

병비(1~4급)가 지급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보장은 소멸되며 이 보장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하지 않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보장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보장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보장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 3-2. 장기요양간병비(1~2급) 보장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었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최초1회에 한하여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장기요양간병비(1~2급)로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었을 경우」라 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또는 2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턴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③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일반조항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④ 일반조항 제30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1. 일반조항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사항
2.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3.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 제4조(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내지 제2항의 판정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장기요양상태를 판정하는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계약내용에 상응하는 “장기요양상태”와 관련된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1. 법령의 개정에 따라 “장기요양상태 판정기준”이 폐지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에 따라 “장기요양상태 판정기준”의 변경으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예시) 장기요양상태 판정기준이 현행 1~2등급에서 신  
체장애등급과 정신장애등급으로 변경되는 경우 등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회사의 건  
전한 경영을 크게 해칠 수가 있거나 계약자에게 불리  
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  
는 경우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계약내용 변경일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취)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계약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려  
드립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내용 변경  
시점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⑤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가  
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⑥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  
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  
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제5조(보장의 소멸)

①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장기요양간  
병비(1~2급)가 지급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  
터 이 보장은 소멸되며 이 보장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하지 않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보장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보장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  
에게 지급합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보장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조항을 따릅니  
다.

### 3-3. 장기요양간병비(1급) 보장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었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최초1회에 한하여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장기요양간병비(1급)로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었을 경우」라 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 ③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일반조항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④ 일반조항 제30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1. 일반조항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사항
2.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물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3.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 제4조(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내지 제2항의 판정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장기요양상태를 판정하는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계약내용에 상응하는 “장기요양상태”와 관련된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1. 법령의 개정에 따라 “장기요양상태 판정기준”이 폐지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에 따라 “장기요양상태 판정기준”의 변경으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예시) 장기요양상태 판정기준이 현행 1등급에서 신체장애등급과 정신장애등급으로 변경되는 경우 등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칠 수가 있거나 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계약내용 변경일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취)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계약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려드립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내용 변경 시점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⑤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⑥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제5조(보장의 소멸)

①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장기요양간병비(1급)가 지급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보장은 소멸되며 이 보장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하지 않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보장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보장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보장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 3-4. 일반상해사망 보장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일반상해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 관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1.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전지에 임한자, 침몰한 선박중에 있던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 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습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3조(보장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일반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이 보장은 소멸되며 이 보장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하지 않는 사유로 사망하는 경우에는 이 보장도 소멸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보장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4조(준용규정)

이 보장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 3-5. 일반상해후유장해 보장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2】(장해분류표)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80%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2.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80%미만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2】(장해분류표)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

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 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이미 이 보장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⑧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수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한다. 의료기관의 종별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진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내지 제3조의3(종합병원)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 100개 이상의 병상 구비, 병상수에 따라 일정 개수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제3조(보장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이 보장도 소멸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보장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4조(준용규정)

이 보장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 3-6. 일반상해사망가족생활지원금(10년매년지급형) 보장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일반상해사망가족생활지원금(10년매년지급형)으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 구분                              | 지급금액                       | 지급시기 및 지급횟수                         |
|---------------------------------|----------------------------|-------------------------------------|
| 일반상해사망<br>가족생활지원금<br>(10년매년지급형) | 이 보장의<br>보험가입금액<br>10% 해당액 | 매년 지급사유<br>발생해당일에 10년간<br>확정지급(10회) |

#### 【예시】

| 총지급금액   | 지급기준                | 가입금액 등 표기 |           |
|---------|---------------------|-----------|-----------|
|         |                     | 가입금액      | 1회<br>지급액 |
| 1,000만원 | 보험가입금액 10%<br>× 10회 | 1,000만원   | 100만원     |

② 제1항의 금액은 보험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일시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로 할인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월의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마지막날을 지급사유 발생해당일로 합니다.

### 【지급사유 발생해당일】

최초 지급사유 발생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합니다.

예시1) 지급사유 발생일: 2016년 10월 1일 => 지급사유 발생해당일: 10월 1일

예시2) 지급사유 발생일: 2016년 2월 29일 => 지급사유 발생해당일: 2월 마지막날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 관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1.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 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습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3조(보장의 소멸)

①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일반상해사

망가족생활지원금(10년매년지급형)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보장은 소멸되며 이 보장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하지 않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보장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보장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4조(준용규정)**

이 보장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 제4절 3종(장기간병월지급플랜) 보장조항

### 4-1. 장기요양간병지원금(1~4급)(5년매월지급형) 보장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었을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장기요양간병지원금(1~4급)(5년매월지급형)으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 구분                               | 지급금액            | 지급시기 및 지급횟수                        |
|----------------------------------|-----------------|------------------------------------|
| 장기요양간병지원금<br>(1~4급)<br>(5년매월지급형) | 이 보장의<br>보험가입금액 | 매월 지급사유<br>발생해당일에 5년간<br>확정지급(60회) |

#### 【예시】

| 총지급금액 | 지급기준         | 가입금액 등 표기 |           |
|-------|--------------|-----------|-----------|
|       |              | 가입금액      | 1회<br>지급액 |
| 600만원 | 보험가입금액 × 60회 | 10만원      | 10만원      |

② 제1항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었을 경우」라 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2등급, 3등급 또는 4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③ 제1항의 금액은 보험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일시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로 할인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월의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마지막날을 지급사유 발생해당일로 합니다.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③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이라 함은 일반조항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④ 일반조항 제30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1. 일반조항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사항
2.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물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3.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 제4조(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내지 제2항의 판정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장기요양상태를 판정하는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계약내용에 상응하는 “장기요양상태”와 관련된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1. 법령의 개정에 따라 “장기요양상태 판정기준”이 폐

지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장기요양상태 판정기준”의 변경으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예시) 장기요양상태 판정기준이 현행 1~4등급에서 신장장애등급과 정신장애등급으로 변경되는 경우 등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칠 수가 있거나 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계약내용 변경일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취)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계약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려드립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내용 변경 시점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⑤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⑥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제5조(보장의 소멸)

- ①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장기요양간병지원금(1~4급)(5년매월지급형)이 지급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보장은 소멸되며 이 보장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하지 않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보장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보장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보장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 4-2. 장기요양간병지원금(1~2급)(5년매월지급형) 보장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었을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장기요양간병지원금(1~2급)(5년매월지급형)으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 구분                               | 지급금액            | 지급시기 및 지급횟수                        |
|----------------------------------|-----------------|------------------------------------|
| 장기요양간병지원금<br>(1~2급)<br>(5년매월지급형) | 이 보장의<br>보험가입금액 | 매월 지급사유<br>발생해당일에 5년간<br>확정지급(60회) |

#### 【예시】

| 총지급금액 | 지급기준         | 가입금액 등 표기 |           |
|-------|--------------|-----------|-----------|
|       |              | 가입금액      | 1회<br>지급액 |
| 600만원 | 보험가입금액 × 60회 | 10만원      | 10만원      |

② 제1항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었을 경우」라 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또는 2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③ 제1항의 금액은 보험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일시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로 할인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월의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마지막날을 지급사유 발생해당일로 합니다.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

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③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이라 함은 일반조항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④ 일반조항 제30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1. 일반조항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사항
2.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3.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 제4조(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내지 제2항의 판정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장기요양상태를 판정하는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계약내용에 상응하는 “장기요양상태”와 관련된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

의 변경사항을 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1. 법령의 개정에 따라 “장기요양상태 판정기준” 이 폐지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에 따라 “장기요양상태 판정기준” 의 변경으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예시) 장기요양상태 판정기준이 현행 1~2등급에서 신  
체장애등급과 정신장애등급으로 변경되는 경우 등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회사의 전  
전한 경영을 크게 해칠 수가 있거나 계약자에게 불리  
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  
는 경우
-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계약내용 변경일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취)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계약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려  
드립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내용 변경  
시점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⑤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가  
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⑥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  
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  
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제5조(보장의 소멸)

- ①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장기요양간  
병지원금(1~2급)(5년매월지급형)이 지급된 때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보장은 소멸되며 이 보장의 해지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하지 않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보장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보장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보장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 4-3. 장기요양간병지원금(1급)(5년매월지급형) 보장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었을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장기요양간병지원금(1급)(5년매월지급형)으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 구분                             | 지급금액            | 지급시기 및 지급횟수                        |
|--------------------------------|-----------------|------------------------------------|
| 장기요양간병지원금<br>(1급)<br>(5년매월지급형) | 이 보장의<br>보험가입금액 | 매월 지급사유<br>발생해당일에 5년간<br>확정지급(60회) |

#### 【예시】

| 총지급금액 | 지급기준            | 가입금액 등 표기 |           |
|-------|-----------------|-----------|-----------|
|       |                 | 가입금액      | 1회<br>지급액 |
| 600만원 | 보험가입금액 ×<br>60회 | 10만원      | 10만원      |

② 제1항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었을 경우」라 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③ 제1항의 금액은 보험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일시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로 할인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월의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마지막날을 지급사유 발생해당일로 합니다.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③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일반조항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④ 일반조항 제30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1. 일반조항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사항
2.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3.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 제4조(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내지 제2항의 판정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장기요양상태를 판정하는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계약내용에 상응하는 “장기요양상태”와 관련된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1. 법령의 개정에 따라 “장기요양상태 판정기준”이 폐지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에 따라 “장기요양상태 판정기준”의 변경으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예시) 장기요양상태 판정기준이 현행 1등급에서 신체장애등급과 정신장애등급으로 변경되는 경우 등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회사의 전환 경영을 크게 해칠 수가 있거나 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계약내용 변경일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취)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계약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려드립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내용 변경 시점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⑤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⑥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제5조(보장의 소멸)

- ①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장기요양간병지원금(1급)(5년매월지급형)이 지급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보장은 소멸되며 이 보장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하지 않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보장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보장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보장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 4-4. 일반상해사망 보장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일반상해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 관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1.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전지에 임한자, 침몰한 선박중에 있던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 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습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3조(보장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일반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이 보장은 소멸되며 이 보장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하지 않는 사유로 사망하는 경우에는 이 보장도 소멸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보장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4조(준용규정)

이 보장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 4-5. 일반상해후유장해 보장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2】(장해분류표)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80%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2.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80%미만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2】(장해분류표)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

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 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이미 이 보장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⑧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수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한다. 의료기관의 종별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진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내지 제3조의3(종합병원)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 100개 이상의 병상 구비, 병상수에 따라 일정 개수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제3조(보장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이 보장도 소멸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보장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4조(준용규정)

이 보장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 4-6. 일반상해사망가족생활지원금(10년매년지급형) 보장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일반상해사망가족생활지원금(10년매년지급형)으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 구분                              | 지급금액                       | 지급시기 및 지급횟수                         |
|---------------------------------|----------------------------|-------------------------------------|
| 일반상해사망<br>가족생활지원금<br>(10년매년지급형) | 이 보장의<br>보험가입금액<br>10% 해당액 | 매년 지급사유<br>발생해당일에 10년간<br>확정지급(10회) |

#### 【예시】

| 총지급금액   | 지급기준                | 가입금액 등 표기 |           |
|---------|---------------------|-----------|-----------|
|         |                     | 가입금액      | 1회<br>지급액 |
| 1,000만원 | 보험가입금액 10%<br>× 10회 | 1,000만원   | 100만원     |

② 제1항의 금액은 보험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일시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로 할인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월의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마지막날을 지급사유 발생해당일로 합니다.

### **【지급사유 발생해당일】**

최초 지급사유 발생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합니다.

예시1) 지급사유 발생일: 2016년 10월 1일 => 지급사유 발생해당일: 10월 1일

예시2) 지급사유 발생일: 2016년 2월 29일 => 지급사유 발생해당일: 2월 마지막날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 관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1.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 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습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3조(보장의 소멸)**

①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일반상해사

망가족생활지원금(10년매년지급형)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보장은 소멸되며 이 보장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하지 않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보장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보장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4조(준용규정)**

이 보장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 제5절 4종(실버플랜) 보장조항

### 5-1. 장기요양간병비(1~4급) 보장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었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최초1회에 한하여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장기요양간병비(1~4급)로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었을 경우」라 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2등급, 3등급 또는 4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③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일반조항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④ 일반조항 제30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1. 일반조항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사항
2.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3.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 제4조(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내지 제2항의 판정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장기요양상태를 판정하는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계약내용에 상응하는 “장기요양상태”와 관련된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1. 법령의 개정에 따라 “장기요양상태 판정기준”이 폐지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에 따라 “장기요양상태 판정기준”의 변경으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예시) 장기요양상태 판정기준이 현행 1~4등급에서 신  
체장애등급과 정신장애등급으로 변경되는 경우 등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회사의 전한 경영을 크게 해칠 수가 있거나 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계약내용 변경일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취)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계약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려드립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내용 변경

시점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⑤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⑥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제5조(보장의 소멸)

①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장기요양간병비(1~4급)가 지급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보장은 소멸되며 이 보장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하지 않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보장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보장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보장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 5-2. 장기요양간병비(1~2급) 보장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었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최초1회에 한하여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장기요양간병비(1~2급)로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었을 경우」라 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또는 2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③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일반조항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④ 일반조항 제30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1. 일반조항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사항
2.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3.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 제4조(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내지 제2항의 판정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장기요양상태를 판정하는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계약내용에 상응하는 “장기요양상태”와 관련된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1. 법령의 개정에 따라 “장기요양상태 판정기준”이 폐지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에 따라 “장기요양상태 판정기준”의 변경으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예시) 장기요양상태 판정기준이 현행 1~2등급에서 신체장애등급과 정신장애등급으로 변경되는 경우 등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회사의 전환 경영을 크게 해칠 수가 있거나 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계약내용 변경일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취)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계약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려드립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내용 변경 시점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⑤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⑥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제5조(보장의 소멸)

①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장기요양간병비(1~2급)가 지급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보장은 소멸되며 이 보장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하지 않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보장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보장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보장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 5-3. 장기요양간병비(1급) 보장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었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최초1회에 한하여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장기요양간병비(1급)로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었을 경우」라 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③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일반조항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④ 일반조항 제30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1. 일반조항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사항
2.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물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3.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 제4조(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내지 제2항의 판정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장기요양상태를 판정하는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계약내용에 상응하는 “장기요양상태”와 관련된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1. 법령의 개정에 따라 “장기요양상태 판정기준”이 폐지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에 따라 “장기요양상태 판정기준”의 변경으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예시) 장기요양상태 판정기준이 현행 1등급에서 신체장애등급과 정신장애등급으로 변경되는 경우 등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칠 수가 있거나 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

는 경우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계약내용 변경일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취)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계약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려 드립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내용 변경 시점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⑤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⑥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제5조(보장의 소멸)

①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장기요양간병비(1급)가 지급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보장은 소멸되며 이 보장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하지 않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보장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보장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보장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 5-4. 일반상해사망 보장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일반상해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 관계를 확정 시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1.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전지에 임한자, 침몰한 선박중에 있던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 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습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3조(보장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일반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이 보장은 소멸되며 이 보장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하지 않는 사유로 사망하는 경우에는 이 보장도 소멸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보장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4조(준용규정)

이 보장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 5-5. 일반상해후유장해 보장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2】(장해분류표)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80%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2.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80%미만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2】(장해분류표)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 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이미 이 보장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⑧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수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의 종별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집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내지 제3조의3(종합병원)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 100개 이상의 병상 구비, 병상수에 따라 일정 개수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제3조(보장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이 보장도 소멸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보장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4조(준용규정)

이 보장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 5-6. 일반상해사망가족생활지원금(10년매년지급형) 보장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일반상해사망가족생활지원금(10년매년지급형)으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 구분                              | 지급금액                       | 지급시기 및 지급횟수                         |
|---------------------------------|----------------------------|-------------------------------------|
| 일반상해사망<br>가족생활지원금<br>(10년매년지급형) | 이 보장의<br>보험가입금액<br>10% 해당액 | 매년 지급사유<br>발생해당일에 10년간<br>확정지급(10회) |

**【예시】**

| 총지급금액   | 지급기준                | 가입금액 등 표기 |        |
|---------|---------------------|-----------|--------|
|         |                     | 가입금액      | 1회 지급액 |
| 1,000만원 | 보험가입금액 10%<br>× 10회 | 1,000만원   | 100만원  |

② 제1항의 금액은 보험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일시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로 할인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월의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마지막날을 지급사유 발생해당일로 합니다.

**【지급사유 발생해당일】**

최초 지급사유 발생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합니다.

예시1) 지급사유 발생일: 2016년 10월 1일 ⇒ 지급사유 발생해당일: 10월 1일

예시2) 지급사유 발생일: 2016년 2월 29일 ⇒ 지급사유 발생해당일: 2월 마지막날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 관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1.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 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습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3조(보장의 소멸)

①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일반상해사망가족생활지원금(10년매년지급형)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보장은 소멸되며 이 보장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하지 않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보장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보장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4조(준용규정)

이 보장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 5-7. 화상진단비 보장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별표8】 (화상분류표)에 정한 화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화상진단비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매 사고시마다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화상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하여 【별표8】 (화상분류표)에 정한 화상(열상을 포함합니다)에 해당되고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말합니다.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화상진단비는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화상 상태인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화상진단비를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3조(보장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이 보장도 소멸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보장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4조(준용규정)

이 보장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 5-8. 상해흉터복원수술비 보장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등에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흉터)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다만,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시점에 만15세 미만일 경우 부득이 사고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성형수술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진단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을 받은 경우 아래에 정한 금액을 상해흉터복원수술비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하나의 사고에 대하여 500만원한도로 지급합니다.

(보험가입금액 7만원 고정)

| 구분   | 안면부             | 상지·하지                             |
|------|-----------------|-----------------------------------|
| 지급금액 | 수술 1cm당<br>14만원 | 수술 1cm당 7만원<br>(단, 3cm이상의 경우에 한함) |

주) 길이측정이 불가한 피부이식수술 등의 경우 수술cm는 최장직경으로 함

② 제1항에서 정한 안면부, 상지, 하지란 다음을 말합니다.

1. 안면부란 이마를 포함하여 목까지의 얼굴부분을 말합니다.
2. 상지란 견관절 이하의 팔부분을 말합니다.
3. 하지란 고관절 이하 대퇴부, 하퇴부, 족부를 의미하며, 둔부, 서혜부, 복부 등은 제외합니다.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상해흉터복원수술비는 하나의 사고로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합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보장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수술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③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3.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④ 제1항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 제4조(보장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이 보장도 소멸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보장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5조(준용규정)

이 보장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 5-9. 깁스치료비 보장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깁스치료비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매 치료시마다 지급합니다.

#### 【용어풀이】

깁스(Cast)치료의 정의: 깁스(Cast)치료라 함은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Fiberglass Cast)를 병변이 있는 뼈, 관절부위의 둘레 모두에 착용시켜(Circular Cast) 감은 다음 굳어지게 하여 치료 효과를 가져오는 치료법을 의미함. 단,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Fiberglass Cast)를 고정할 부분의 일측면 또는 양측면에 착용시키고 대주는 치료법은 제외합니다.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깁스치료비는 같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치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또는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깁스치료비를 지급합니다.

②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④ 제3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일반조항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⑤ 일반조항 제30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3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3조(보장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이 보장도 소멸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보장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4조(준용규정)

이 보장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 5-10.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보장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에 장기수혜자로서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았을 때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최초 1회에 한하여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서 『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각종 혈액질환 및 악성종양 치료시 발생하는 골수부전상태를 근본적으로 치료할 목적으로 정상적인 조혈모세포를 이식하는 시술로서 관련법규에 따라 정부에서 인정한 무균실이 있는 골수이식의료기관에서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한 동종(골수, 말초)조혈모세포이식, 자가(골수, 말초)조혈모세포이식, 제대혈조혈모세포이식 시술을 말합니다. 단, 조혈모세포를 제공하는 공여자로부터 조혈모세포를 채취하는 시술은 제외합니다.

1. 『동종(allogenic)골수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정상적인 조혈모세포를 가진 공여자의 골수내 조혈모세포를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동종(allogenic)말초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정상적인 조혈모세포를 가진 공여자의 말초혈액내 조혈모세포를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3. 『자가(autologous)골수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피보험자의 골수내 조혈모세포를 미리 채취하여 보관하였다가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다시 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4. 『자가(autologous)말초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피보험자의 말초혈액내 조혈모세포를 미리 채취하여 보관하였다가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다시 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5. 『제대혈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정상적인 조혈모세포가 있는 제대혈내조혈모세포를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 ③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일반조항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④ 일반조항 제30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보장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수술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③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3.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④ 제1항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 제4조(보장의 소멸)

①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조혈모세포 이식수술비가 지급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보장은 소멸되며 이 보장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이 보장도 소멸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보장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5조(준용규정)

이 보장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 5-11. 각막이식수술비 보장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수혜자로서 각막이식수술을 받았을 때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최초 1회에 한하여 각막이식수술비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서 『각막이식수술』이라 함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기증자의 각막을 이식대상자(피보험자)에게 이식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 ③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일반조항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④ 일반조항 제30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보장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수술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③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3.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④ 제1항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 제4조(보장의 소멸)

①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각막이식수술비가 지급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보장은 소멸되며 이 보장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이 보장도 소멸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보장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5조(준용규정)

이 보장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 제도성 특별약관

###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

#### 제1조(계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보통약관 및 다른 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는 그 특별약관도 포함합니다, 이하 “보험계약” 이라 합니다.)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② 이 특별약관의 효력발생일은 일반조항 제26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③ 보험계약이 해지,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④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보험계약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하는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활동 등 주기적으로 운전(탑승을 포함합니다.)한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위 제1항의 이륜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이륜자동차[1명 또는 2명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2륜의 자동차(2륜인 자동차에 1륜의 축차를 붙인 것과 배기량 125cc이하로서 3륜 이상인 자동차를 포함합니다)]와 배기량이 50cc미만(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정격 출력이 0.59kW미만)인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③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사고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인가 아닌가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관할 경찰서에서 발행한

사고처리 확인원 등으로 결정합니다.

### 제3조(해지된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 보험계약과 동시에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험계약을 따릅니다.

##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 제1조(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부터 이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에 따라 계약자의 거래은행 지정계좌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자동 납입합니다.

### 제2조(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 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매월 회사가 정하는 날 중 계약자가 희망하는 일자로 합니다.

### 제3조(계약후 알릴 의무)

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 또는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가. 초회보험료자동납입 추가특별약관

### 제1조(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제1회 보험료의 납입방법을 계약자의 거래은행 지정 계좌를 통한 자동납입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회사는 청약서를 접수하고 자동이체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다만,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료의 납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거래은행의 지정계좌로부터 제1회 보험료가 이체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를 청약일 및 제

1회 보험료 납입일로 하여 일반조항의 제19조(보험계약의 성립)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회사는 청약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금융기관의 해당계좌에서 제1회 보험료를 받고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 **제2조(계약후의 알릴의무)**

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 또는 거래정지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제3조(준용규정)**

이 초회보험료자동납입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보험료자동납입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별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 구 분                         | 적 립 기 간                            | 적 립 이 율                  |
|-----------------------------|------------------------------------|--------------------------|
| 보장<br>보험금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br>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                             | 지급기일의<br>31일이후부터 60일내<br>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br>가산이율(4.0%) |
|                             | 지급기일의<br>61일이후부터 90일내<br>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br>가산이율(6.0%) |
|                             | 지급기일의 91일이후<br>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br>가산이율(8.0%) |
| 만기<br>환급금<br>및<br>해지<br>환급금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br>다음날부터<br>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 :<br>공시이율의 50%      |
|                             |                                    | 1년초과기간 : 1%              |
|                             |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br>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 주) 1. 만기환급금은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2.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금리 연동형보험은 일자 계산합니다.
3.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가산이율 적용시 제9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5.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장애분류표

총 칙

1. 장애의 정의

- 1) 『장애』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애에 포함되지 않는다.
-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하는 때 장애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로써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 3)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애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장애 지급률의 20%를 한시장애 지급률로 정합니다.

2. 신체부위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⑩ 손가락 ⑪ 발가락 ⑫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⑬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우의 눈, 귀, 팔, 다리는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3. 기타

- 1) 하나의 장애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애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애에 다른 장애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
- 2)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3)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애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4) 장애인단서에는 ① 장애인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애의 내용과 그 정도 ③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④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신경계정신행동 장애의 경우 ① 개호(장애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여부 ②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 장애분류별 판정기준

### 1. 눈의 장애

#### 가. 장애의 분류

| 장애의 분류                                 | 지급률(%) |
|--|--------|
| 1) 두 눈이 멀었을 때                          | 100    |
| 2) 한 눈이 멀었을 때                          | 50     |
|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 35     |
|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 25     |
| 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 15     |
| 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2 이하로 된 때              | 5      |
| 7) 한 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애나 뚜렷한 조절기능장애를 남긴 때 | 10     |
| 8) 한 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반맹증, 시야협착, 암점을 남긴 때  | 5      |
| 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 10     |
|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를 남긴 때           | 5      |

#### 나. 장애판정기준

- 1) 시력장애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측정한다.
- 2)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시력을 말한다.
- 3) 『한 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눈동자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광각』)를 말한다.

- 4) 안구운동장애의 판정은 외상 후 1년 이상이 지난 뒤 그 장애정도를 평가한다.
- 5) 『안구의 뚜렷한 운동장애』라 함은 안구의 주시야(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눈만을 움직여서 볼 수 있는 범위)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나 정면 양안시(두 눈으로 하나의 사물을 보는 것)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때를 말한다.
- 6) 『안구의 뚜렷한 조절기능장애』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45세 이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7) 『시야가 좁아진 때』라 함은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 시야의 60%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 8)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 자위)이 완전히 덮이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9)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10) 외상이나 화상 등으로 눈동자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이 가산된다. 이 경우 눈동자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凹沒) 등으로 의안마저 끼워 넣을 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으로, 의안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 11)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추한 모습)장애를 포함하여 장애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추한 모습)장애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애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 2. 귀의 장애

### 가. 장애의 분류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
|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80     |
|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 45     |
|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25     |
|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 15     |
|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 5      |
|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 10     |

## 나. 장해판정기준

- 1) 청력장애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3) 『심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4)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ABR), 자기청력계기검사, 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애를 평가한다.

## 다. 귓바퀴의 결손

-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0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하며, 귓바퀴의 결손이 1/20미만이고 기능에 문제가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애로 평가한다.

## 3. 코의 장애

### 가. 장애의 분류

| 장애의 분류              | 지급률(%) |
|---------------------|--------|
|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15     |

#### 나. 장애판정기준

-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양쪽 코의 호흡곤란 또는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애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애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애와 각각 더하여 지급한다.

###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애

#### 가. 장애의 분류

| 장애의 분류                              | 지급률(%) |
|-------------------------------------|--------|
|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 100    |
| 2)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 80     |
| 3)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 40     |
| 4)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 20     |
| 5)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 10     |
| 6)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 5      |
| 7)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20     |
| 8)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10     |
| 9)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5      |

#### 나. 장애의 평가기준

- 씹어먹는 기능의 장애는 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교합),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물

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 ① 양순음/입술소리(ㅁ, ㅂ, ㅍ)
  - ② 치조음/잇몸소리(ㄴ, ㄷ, ㄹ)
  - ③ 구개음/입천장소리(ㄱ, ㅋ, ㆁ)
  - ④ 후두음/목구멍소리(ㅇ, ㅎ)
- 6)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2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7)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1종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8) 뇌의 언어중추 손상에 따른 실어증도 말하는 기능의 장애로 평가한다.
- 9) 『치아의 결손』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1/3 이상이 파절(깨짐, 부러짐)된 경우를 말한다.
- 10) 유상의치 또는 가교의치 등을 보철한 경우의 지대관 또는 구의 장착치와 포스트, 인레인만을 한 치아는 결손된 치아로 인정하지 않는다.
- 11)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구조 등의 문제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 12) 어린이의 유치와 같이 새로 자라서 갈 수 있는 치아는 장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13) 신체의 일부에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의치의 결손은 장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애

## 가. 장애의 분류

| 장애의 분류                     | 지급률(%) |
|----------------------------|--------|
|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15     |
|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5      |

## 나. 장애판정기준

- 1)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 2) 『추상(추한 모습)장애』라 함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하며, 재건수술로 흉터를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다.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 1) 얼굴
  - ①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② 길이 10cm 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 ③ 지름 5cm 이상의 조직함몰
  - ④ 코의 1/2이상 결손
- 2) 머리
  - ①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 ②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라.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 1) 얼굴
  - ①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② 길이 5cm 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 ③ 지름 2cm 이상의 조직함몰
  - ④ 코의 1/4이상 결손
- 2) 머리
  - ①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모발결손
  - ② 머리뼈의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 3) 목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마.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의 크기를 말하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10cm(1/2 크기는 40cm<sup>2</sup>, 1/4 크기는 20cm<sup>2</sup>), 6~11세의 경우는 6×8cm(1/2 크기는 24cm<sup>2</sup>, 1/4 크기는 12cm<sup>2</sup>), 6세 미만의 경우는 4×6cm(1/2 크기는 12cm<sup>2</sup>, 1/4 크기는 6cm<sup>2</sup>)으로 간주한다.

## 6. 척추(등뼈)의 장애

### 가. 장애의 분류

| 장애의 분류                    | 지급률(%) |
|---------------------------|--------|
|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애를 남긴 때  | 40     |
|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애를 남긴 때 | 30     |
|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애를 남긴 때 | 10     |
|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 50     |
|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30     |
|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 15     |
| 7)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20     |
| 8)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15     |
| 9)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10     |

### 나. 장애판정기준

- 1) 척추(등뼈)는 경추(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한 부위로 한다.
- 2) 척추(등뼈)의 장애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이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 3) 심한 운동장애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4개 이상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 4) 뚜렷한 운동장애
  - ①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3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

한 상태

- ② 머리뼈와 상위경추(상위목뼈: 제1,2목뼈)사이에서 두  
러한 이상전위가 있을 때
- 5) 약간의 운동장애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2개의 척추체  
(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 6) 심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35° 이상의 척추전만증  
(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  
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 7) 뚜렷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15° 이상의 척추전만증  
(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  
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  
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 8) 약간의 기형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경도(가벼운 정  
도)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및 척  
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측만증  
(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 9)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인하여 추간판을 2마디  
이상 수술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2회 이상 수술하  
고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  
는 대소변의 장애가 있는 경우
- 10)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여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특수 보  
조검사에서도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  
가 인정되는 경우
- 11)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특수검사(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  
에서 추간판 병변이 확인되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하지방사통(주변부위로 뻗치는 증상)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 12)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수  
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애 및 기형장애로 평가하지  
않는다.

## 7. 체간골의 장애

### 가. 장애의 분류

| 장애의 분류                         | 지급률(%) |
|--------------------------------|--------|
| 1)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15     |
| 2)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10     |

### 나. 장애판정기준

-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한 부위로 한다.
-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
  - ①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 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또는 여자에게 정상분만에 지장을 줄 정도로 골반의 변형이 남은 상태
  - ② 알몸이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로 측정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
- 3)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 또는 어깨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라 함은 알몸이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로 측정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4) 갈비뼈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애로 취급한다.

## 8. 팔의 장애

### 가. 장애의 분류

| 장애의 분류                                | 지급률(%) |
|---------------------------------------|--------|
| 1) 두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 100    |
| 2)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 60     |
| 3) 한 팔의 3대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30     |
| 4) 한 팔의 3대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 20     |
| 5) 한 팔의 3대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 10     |
| 6) 한 팔의 3대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 5      |
| 7)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 20     |
|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 10     |
| 9) 한 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5      |

## 나. 장애판정기준

-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애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애를 판정한다.
-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애(예컨대 석고붕대(cast)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장애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애는 장애보상을 하지 않는다.
-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肩關節)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 4) 『팔의 3대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목관절을 말한다.
- 5)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 6) 팔의 관절기능 장애 평가는 팔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신체장애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애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애부위의 장애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애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나) 『심한 장애』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②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다) 『뚜렷한 장애』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라) 『약간의 장애』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요골과 척골의 2개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요골과 척골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다. 지급률의 결정

-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애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더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 2)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애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더한다.

### 9. 다리의 장애

#### 가. 장애의 분류

| 장애의 분류                                 | 지급률(%) |
|--|--------|
| 1) 두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 100    |
| 2)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 60     |
| 3) 한 다리의 3대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30     |
| 4) 한 다리의 3대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 20     |
| 5) 한 다리의 3대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 10     |
| 6) 한 다리의 3대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 5      |
| 7)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 20     |
| 8)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 10     |
| 9)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5      |
| 10) 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                 | 30     |
| 11) 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                 | 15     |
| 12) 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 5      |

#### 나. 장애판정기준

-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애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애를 판정한다.
-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애(예컨대 석고붕대(cast)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장애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애에 대하여는 장애보상을 하지 않는다.
-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부터 발목관절까지를 말한다.
-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을 말한다.
- 5)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 6) 다리의 관절기능 장애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신체장애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애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애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나) 『심한 장해』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익스션)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 ③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다) 『뚜렷한 장해』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익스션)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라) 『약간의 장해』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익스션)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경골과 종아리뼈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경골과 종아리뼈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0) 다리의 단축은 상전장골극에서부터 경골내측과 하단까지의 길이를 측정하여 정상인 쪽 다리의 길이와 비교하여 단축된 길이를 산출한다. 다리 길이의 측정에 이용하는 골표적(bony landmark)이 명확하지 않은 경

우나 다리의 단축장애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스캐노그램(scanogram)으로 다리의 단축정도를 측정한다.

#### 다. 지급률의 결정

- 1)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후유장애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더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 2)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애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더한다.

### 10. 손가락의 장애

#### 가. 장애의 분류

| 장애의 분류   | 지급률(%) |
|--|--------|
| 1) 한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55     |
| 2) 한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 15     |
| 3)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br>(손가락 하나 마다)                          | 10     |
| 4) 한손의 5개 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 30     |
| 5) 한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 10     |
| 6)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br>(손가락 하나 마다) | 5      |

#### 나. 장애판정기준

- 1)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 2)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 3)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손가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 4)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뼈를 잃었거나 뺏조각이 떨어져 있는 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 5) 『손가락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손가락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이며 이 경우 손가락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 가능영역으로 측정한다. 첫째 손가락 이외의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을 더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 6) 한 손가락에 장애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더한다.

## 11. 발가락의 장애

### 가. 장애의 분류

| 장애의 분류  | 지급률(%) |
|---|--------|
| 1) 한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 40     |
| 2) 한발의 5개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30     |
| 3)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잃었을 때   | 10     |
| 4)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 (발가락 하나마다)                          | 5      |
| 5) 한발의 5개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 20     |
| 6) 한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 8      |
| 7)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발가락 하나마다) | 3      |

### 나. 장애판정기준

- 1)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 2)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 3)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에서 발가락뼈를 잃었을 때를 말하고 단순히 살점이 떨어진 것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 4) 『발가락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발가락의 생리적 운동 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를 말하며, 이 경우 발가락의 주된 기능인 발가락 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기능을 측정하여 결정한다.
- 5) 한 발가락에 장애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더한다.

## 12.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애

### 가. 장애의 분류

| 장애의 분류                             | 지급률(%) |
|------------------------------------|--------|
|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 75     |
|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 50     |
|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 20     |

### 나. 장애의 판정기준

-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 ① 심장,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 ②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도록 받아야 할 때
  - ③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때
-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 ① 위, 대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 ② 소장 또는 간장의 3/4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 ③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 ①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이나 한쪽의 폐를 잘라내었을 때
  - ② 장루,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 장문합이 남았을 때
  - ③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으로 인공요도가 필요한 때
  - ④ 음경의 1/2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 등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 ⑤ 항문 괄약근의 기능장애로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 (치료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의 장애로 일상생활 기본 동작에 제한이 있는 경우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 (ADLs) 제한 장애평가표』에 따라 장애를 평가하고 둘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5)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은 장애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13. 신경계정신행동 장애

#### 가. 장애의 분류

| 장애의 분류   | 지급률 (%) |
|--|---------|
| 1) 신경계에 장애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 10~100  |
|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애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인 감시 또는 감금상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                         | 100     |
| 3) 정신행동에 심한 장애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감시를 요할 때 | 70      |
|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장보기 등의 기본적 사회 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          | 40      |
| 5)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 100     |
| 6)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 80      |
| 7)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 60      |
| 8)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 40      |
| 9)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70      |
| 10)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40      |
| 11)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10      |

## 나. 장애판정기준

### 1) 신경계

- ① 『신경계에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 손상으로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애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한다.
- ② 위 ①의 경우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애평가표』상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애로 인정하지 않는다.
- ③ 신경계의 장애로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애(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애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④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를 평가한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 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에서 장애 평가를 유보한다.
- ⑤ 장애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로 한다.

### 2) 정신행동

- ① 위의 정신행동장애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애는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애평가표』에 따라 지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 ② 일반적으로 상해를 입고 나서 24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상해를 입고 나서 18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할 수 있다. 다만, 장애는 전문적 치료를 충분히 받은 후 판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써 고정되거나 중하게 된 장애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 ③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 전문가가 시행하고 전문의가 작성하여야 한다.
- ④ 전문의란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말한다.
- ⑤ 평가의 객관적 근거
  - ㉠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 촬영, 뇌전산화촬영, 뇌파 등을 기초로 한다.

- ㉔ 객관적 근거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 감정의 추정이나 인정
  -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낮은 검사들(뇌SPECT 등)
  -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아닌 자가 시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 ⑥ 각종 기질성 정신장애와 외상 후 간질에 한하여 보상한다.
- ⑦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 편집증, 조울증(정서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⑧ 정신 및 행동장애의 경우 개호인(장애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사람)은 생명유지를 위한 동작과 행동이 불가능하거나 지속적으로 감금해야 하는 상태에 한하여 인정한다. 개호의 내용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개호와 행동감시를 위한 개호를 구별하여야 한다.

### 3) 치매

- ① 『치매』라 함은
  - 뇌 속에 후천적으로 생긴 기질적인 병으로 인한 변화 또는 뇌 속에 손상을 입은 경우
  -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위의 기질성 장애로 파괴되어 한번 획득한 지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 ② 치매의 장애평가는 전문의에 의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른다.

### 4) 뇌전증(간질)

- ① 『간질』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 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으로 발작(경련, 의식장애 등)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심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발작할 때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 ③ 『뚜렷한 간질 발작』 이라 함은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 ④ 『약간의 간질 발작』 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 ⑤ 『중증발작』 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써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해가 3분 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 ⑥ 『경증발작』 이라 함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 구분    | 제한정도에 따른 지급률   |
|-------|--|
| 이동능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지급률 40%)</li> <li>-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30%)</li> <li>- 목발 또는 보행기(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20%)</li> <li>-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절뚝거리는) 상태, 난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계속하여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10%)</li> </ul>                    |
| 음식물섭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사를 전혀 할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20%)</li> <li>-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15%)</li> <li>- 손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li> <li>-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5%)</li> </ul>                                |
| 배변배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20%)</li> <li>- 화장실에 가서 변기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화장지로 닦고 옷을 입는 일에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15%)</li> <li>-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 후 뒤처리기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li> <li>-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운전, 작업, 교육 등)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5%)</li> </ul> |

| 영역     | 제한정도에 따른 지급률   |
|--------|--|
| 목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도움 없이는 샤워 또는 목욕을 할 수 없는 상태(10%)</li> <li>- 샤워는 가능하나, 혼자서는 때밀기를 할 수 없는 상태(5%)</li> <li>- 목욕시 신체(등 제외)의 일부 부위만 때를 밀 수 있는 상태(3%)</li> </ul>  |
| 옷입고 벗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도움 없이는 전혀 옷을 챙겨 입을 수 없는 상태(10%)</li> <li>-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도움 없이는 상의 또는 하의 중 하나만을 착용할 수 있는 상태(5%)</li> <li>- 착용은 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마무리(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는 불가능한 상태(3%)</li> </ul> |

**【별표3】**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항목을 말합니다.

| 대상이 되는 질병                         | 분류번호    |
|-----------------------------------|---------|
|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암)          | C00~C14 |
|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암)                 | C15~C26 |
| 3) 호흡기 및 흉곽내 기관의 악성신생물(암)         | C30~C39 |
|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 C40~C41 |
| 5) 흑색종 및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 C43~C44 |
|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암)            | C45~C49 |
| 7) 유방의 악성신생물(암)                   | C50     |
| 8) 여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암)              | C51~C58 |
| 9) 남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암)              | C60~C63 |
| 10) 요로의 악성신생물(암)                  | C64~C68 |
|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부분의 악성신생물(암) | C69~C72 |
| 12) 갑상선 및 기타 내분비선의 악성신생물          | C73~C75 |
| 13)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 C76~C80 |
| 14)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암)       | C81~C96 |
| 15)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 C97     |
| 16) 진성 적혈구 증가증                    | D45     |
| 17) 골수 형성이상 증후군                   | D46     |
| 18) 만성 골수증식 질환                    | D47.1   |
| 19)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 D47.3   |
| 20) 골수섬유증                         | D47.4   |
| 21)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 D47.5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제8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4】**

**제자리 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제자리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항목을 말합니다.

| 대상이 되는 질병                 | 분류 번호 |
|---------------------------|-------|
| 1) 구강, 식도 및 위의 제자리암종      | D00   |
| 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 | D01   |
| 3) 중이 및 호흡계통의 제자리암종       | D02   |
| 4) 제자리 흑색종                | D03   |
| 5) 피부의 제자리암종              | D04   |
| 6) 유방의 제자리암종              | D05   |
| 7)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            | D06   |
| 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제자리암종 | D07   |
| 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제자리암종    | D09   |

제8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5】**

**행동양식 불명 또는 이상의 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행동양식 불명 또는 이상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항목을 말합니다.

| 대상이 되는 질병                                     | 분류 번호 |
|---|-------|
| 1)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이상의 신생물              | D37   |
| 2) 중이, 호흡기관, 흉곽내 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이상의 신생물       | D38   |
| 3) 여성 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이상의 신생물                | D39   |
| 4) 남성 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이상의 신생물                | D40   |
| 5)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이상의 신생물                   | D41   |
| 6)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이상의 신생물                     | D42   |
| 7) 뇌 및 중추 신경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이상의 신생물             | D43   |
| 8) 내분비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이상의 신생물                   | D44   |
| 9) 행동양식 불명 및 이상의 조직구 및 비만세포 종양                | D47.0 |
| 10) 미결정의 단클론감마글로불린병증                          | D47.2 |
| 11) 기타 명시된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이상의 신생물 | D47.7 |
| 12)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이상의 상세불명 신생물   | D47.9 |
| 13)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이상의 신생물          | D48   |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6】****뇌졸중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뇌졸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 대 상 질 병                        | 분류 번호 |
|--------------------------------|-------|
| 1) 지주막하 출혈                     | 160   |
| 2) 뇌내출혈                        | 161   |
|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 162   |
| 4) 뇌경색증                        | 163   |
| 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 165   |
| 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 166   |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의 추가로 상기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7】****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 대 상 질 병                | 분류 번호 |
|------------------------|-------|
| 1) 급성심근경색증             | 121   |
| 2) 후속 심근경색증            | 122   |
| 3) 급성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 123   |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의 추가로 상기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8】**

**화상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화상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항목을 말합니다.

| 대상이 되는 항목  | 분류 번호 |
|--|-------|
| 1) 머리 및 목의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 T20   |
| 2) 몸통의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 T21   |
| 3)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 T22   |
| 4) 손목 및 손의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 T23   |
| 5) 발목 및 발을 제외한 고관절 및 다리의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 T24   |
| 6) 발목 및 발의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 T25   |
| 7) 눈 및 부속기에 국한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 T26   |
| 8) 기도의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 T27   |
| 9) 기타 내부기관의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 T28   |
| 10)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하는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 T29   |
| 11) 상세불명 신체부위의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 T30   |
| 12)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화상                        | T31   |
| 13)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 T32   |
| 14) 방사선과 관련된 피부 및 피하조직의 기타 장애                      | L59   |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항목 이외의 추가로 상기 분류표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